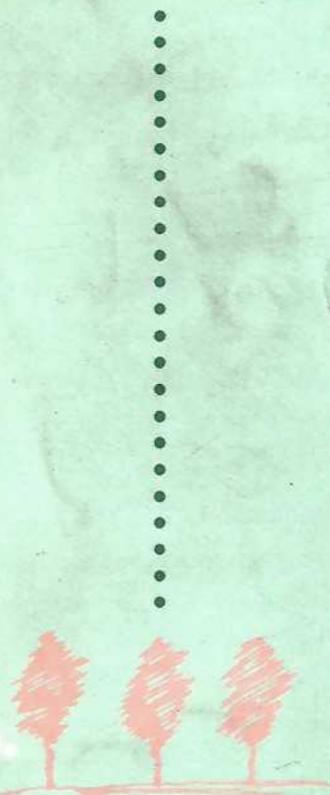


인권학술소식

합본 III 호
(제201~300호)



1995. 4

인천을동사랑방

인권학술소식
합본 III 호 1995. 4

인권정보자료실
R1.1.3

인천을동사랑방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인권하루소식」 8월분 총목차(218호-238호)

월일	호	연	기 사 제 목
8/17	228	1	강기훈, 이제야 나왔다, 17일 새벽 만기출소, 강씨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	‘대량구속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 재일인권단체, 재일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경상대교수 소환·수사철회’ 서명운동 본격화, 13일 학문·사상·표현공대위/전해투 하계수련회, 8월 18-20일/경상대『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폐강/인터뷰 : ‘유서대필 사건’으로 만기출소한 강기훈씨
8/18	229	1	경상대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2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자, “시한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처벌 요구, 변협, ‘현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 위해/여성의 전화, 민우회등 상담교육 시작/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
8/19	230	1	이창복·황인성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18일 연이어 입장 발표, 국보법, 표현·결사의 권리등 국제기준 어긋난다
		2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 총장에 항의서한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황석영씨 환송심 첫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이창복, 황인성씨 18일 검찰송치
8/20	231	1	민교협, “반지성적, 반양심적 박홍총장 사퇴”, “경상대 교수에 대한 사상탄압중단”도/부산·경남 민교협,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항의 방문/불교인권위, 철도·지하철 노동자 돋기 모금, “불교계의 사회적 약자 등한시 반성”/노동법 교실 개최
		2	단체탐방 29 / 전국장애인한기족협회
8/23	232	1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갑질, 22일 민주당 집계통계, 국보법증 이적표현 물 소지·배포혐의 33.6%/북한, 비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 “한국국적 획득은 생계유지 위한 부득이한 것”/폐강항의 경상대 방문/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
		2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8/24	233	1	민간위로금 철회·전쟁범죄 인정·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안에 강력 반발, ‘유엔 공식 조사활동에 협조해야’/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씨 유족에 배상판결
		2/3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위해 아시아국가 방문/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재회중/성모욕 사건 항소심 공판
8/25	234	1	검찰, 경상대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신공안정국 둘파논의, 민가협 수련회
		2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기청동 기소, 1명 석방/경상대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8/26	235	1	“문국진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씨 제4차 손배소송/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설, 8월 29일, YMCA/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8월 29일 공대위/강좌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동안 잠안제우고 수사
		2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등 다뤄, 여성, 노동, 장애인, 노인, 아동단체등 적극 참가
8/27	236	1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 몰아 9명 구속, 사민청 85년 결성, 25일 새벽1시경 압수수색, 유초하 교수3등 수배/경상대교수 “구인옹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공무원 임용탈락 장애인 정강용씨 구제 공대위 결성
		2	단체탐방 30 /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8/30	237	1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통일정책 추진 방해되는 진보학문 탄압 전초전’/YMCA,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열어, ‘법률구조, 상담, 의료활동등 사업계획’
		2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권력에 영합한 사람, 현법재판관 부적절/민정련간부 긴급구속/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것/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 수배해제 촉구
8/31	238	1	권력야합 정치판사, 현재재판관 자격없다, 대한변협·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현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등 예정
		2/3	<인권하루소식> 8월분 총목차(218호-238호)

인권하루소식

94년 9월

(제239호 - 제255호)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남총련 폭력과 경찰 과잉진압등 논쟁의 장 되어야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않다'는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6월 18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차 상경과정에서 열차정차와 홍익대 사태로 무더기 구속을 당했던 남총련의 '6·18' 구속자 58명에 대한 재판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1일 하루만 해도 서일석(조선대 전기공학4)씨를 포함해 18명이 '기차·선박등 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4년~2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 판사 이광열) 심리로 진행된 도남준씨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지검의 이호철 검사는 시중일관 남총

련 학생들의 열차정지와 폭력시위를 확인하는 수준의 심문을 벌였다. 반면 문한성변호사들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여의도집회 참여를 원천봉쇄와 최루탄등 과잉진압으로 막은데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비준반대에서 비준불가의 입장을 표명하고, 민자당의 국회비준 강행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피의자는 부모동 농민들의 농촌현실 인식속에서 UR 비준저지를 위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피의자 도남준(조선대 산업공학3)씨는 "6백만 농민의 생명이며 국민의 밤상인 UR문제를 두고 강의실

큰 국제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허가된 집회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화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식으로 기차나 탈취해 반대시위를 하면 이는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공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채 송정리역 열차정차에 관한 진위등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의 경상대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빛발

장상환교수등 밤샘농성 계속

창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교수등 5명에 불구속기소를, 김의동(38·무역학) 교수등 2명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창호교수는 영장기각에 대해 "당연하다"는 한마디로 대신했다. 그러나 검찰이 8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구분한 점에 대해 "우리는 공동강의와 공동집필을 했기에 분리는 옳지 않다. 사법처리를 받는다면 함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계속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해 "법적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연합, 민교협, 전

국연합 등은 31일 각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가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고, 더구나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재청구를 하려는 검찰 태도가 반시대적인 처사라며 △검찰의 영장재청구기도 철회, △학문적 성과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반민주적 기도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영장기각 이후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에 대해 경상대 박구부 교무처장은 폐강은 학교자체의 결정었다고 전하면서 "이미 학생들이 수강변경을 한뒤라 힘들지만 학내 분위기에 따라 올해 2학기에는 회강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현재 장상환교수등 8명은 경상대 사회과학대 도서관에서 계속 밤샘농성 중이다(관련자료 2면).

<공청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일시 : 94년 9월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주제발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이승우 경원대 교수)
-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한상희 경성대 교수)
- 시민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의 상(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
위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

단체탐방 30 /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꺼 땅에 탄 죽을 할아먹는 고아들 옆에서 통닭파티를 벌이는 나라들의 모습이 그 내용과는 달리 경쾌하게 그려지는 뮤지컬, 올리버 트위스트, 기숙학교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제인에어, 엉뚱한 고아 빨간 머리엔 등을 보며 흘린 눈물의 기억 속에 다른 영상이 겹쳐진다. 부서진 짐터에서 울고있는 전쟁 고아들, 그들이 자수 성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가장 많이 연기하면서 성장한 오늘, 풍요한 오늘 속에 존재하는 아동들의 모습이 겹쳐지면 왜이리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서울·경인 지역에 있는 육아시설 관련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시설문제 연구회」는 이 뿐만 아니라 화면에 입김을 불어넣고 소매로 닦아가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대학생 몇몇이 동아리를 만들어 육아시설 방문 활동을 벌인 데서 시작되었다. 작은 뜻과 풋풋한 정을 모아 찾아간 곳, 그러나 그곳의 아이들은 제대로된 '보호'나 '인자'한 원장선생님과는 거리가 먼 환경속에 있었다. 개별 동아리로 활동하던 이들이 뭉치게 된 계기 또한, 그곳에서 벌어진 성폭행사건 때문이었다. 88년 11월, 폐쇄된 환경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11개 동아리(중앙대 '푸름', 외대 '실천사랑' 등)가 연합회와 「시설문제 연구회」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생들 만이 아니라 직장인이 된 선배들이나 시설종사자, 관련분야 사람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게 되었고, 활동의 폭도 넓하게 되었다.

현재 조직은 회장(이진복), 부회장(김혜경)과 현장활동부, 연구부에 소속된 40여명의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현장활동은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학생 대상의 지침토, 기타, 한자, 문예반 등의 특별활동, 중·고등학생 중심의 상담활동이 있다. 상담은 주로 시설에서 고민, 퇴원후의 취업문제 등에 관한 것이다.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서야 하는 이들의 직업진출에 대한 분석 등은 전무하며 자립금 1백20만원(이는 대도시의 경우이고 지방은 60~80만 원정도)을 쥐고 세상에 나선 이들의

뒤를 보살펴 줄 곳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활동은 육아시설활동가 교육과 지원들의 근로조건 현황과 개선, 시설내의 성폭행문제 등과 사회복지전반에 관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2월에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개 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극소수이고, 성폭행이 발생한 시설에는 보조비 착복과 같은 재정비리, 강제노동, 아동유기, 지원근로조건 열악 등 총체적인 모순구조가 존재함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때리더라도 제발 얼굴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폐쇄된 환경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으며, 관련 세미나에서 시설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주제강연을 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쟁고아, 부모가 없는 진짜(?)고아가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급속한 사회변화, 가족해체로 표현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고아들, 즉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파탄, 양육포기, 아동의 장애를 이유로 한 유기등으로 인해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다. 이들을 만 18세까지 보살피는 보육 사들은 법적으로 아동 14명당 1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14명의 학습, 정서, 건강 등에 세세하게 신경쓴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또한 시설의 물질적 기반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탁, 요리, 청소 등을 떠맡아야 한다면 무게는 더 커진다.

아동의 권리는 '제도'로 뒷받침되어 야지, 어떤 사람의 '인정'에 말길 문제는 아닌 것이다. 시설에 대한 사유의식을 버리고 공적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시설보호가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시설의 문제를 침해하게 드러내는 시설내 성폭행의 문제를 살펴보자. 일반적 특징으로 피해자는 자기방어 능력이나 범죄인지능력이 부족한 아동이거나 장애인이며,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피해대상이 1명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여러명이며 피해기간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는 최고 운영진이나 이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87년 이후에야 이런 사건들은 사회민주화와 관련된 성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 인권의식의 확대, 시설내 자원활동가들의 의식과 활동의 급성장 등에 힘입어 공론화되

이런 문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최고는 시설장들의 '시설사유화의식'이다. 자신의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의 보조금이 1백% 지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일정정도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법인자체를 주로 자신의 친인척에게 세습하고 있는 상황은 사유화의식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결국 시설은 시설자의 것이라는 사유화의식은 시설에 보호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자신의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다를 수 있다는 비뚤어진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 물론 인정과 사랑으로 아동의 삶과 함께 하는 분들도 있다. 문제는 아동이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로 아동의 보호의 질이 결정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란 '제도'로 뒷받침되어 야지, 어떤 사람의 '인정'에 말길 문제는 아닌 것이다. 시설에 대한 사유의식을 버리고 공적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시설보호가 아동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성폭력 사건을 겪은 한 육아원 원생의 글을 읽어보자 한다. "변화된 것이 없다. 외출 금지령이 더욱 심해졌다. 우리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 너무 슬프고 불안하고 쓸쓸하다. D회 언니 오빠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서 섭섭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

자유 좀 주세요 진짜 저희들은 일요일만 되면 꼭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반찬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때린다고 해도 얼굴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주소 :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90-36 (■ 313-5701)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위해 중재전문위원회 구성·긴급배상등 권고

2일 일본, 한국등 관련정부와 민간단체에

국제법률가 단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표명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가 일본의 전후문제 처리방안 중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관련국가에 함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내에 만들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권고문 2면).

이와 관련 「한국정신대문

부에 권고했다. 지난 2일 일본정부에도 한국정부, 필리핀정부 및 기타 관련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권고문을 보낸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일본이 위 문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회를 구성, 이의 결정사항에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해야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국제법률가협회는 "관련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권고문 2면).

이와 관련 「한국정신대문

수사기관에 불법연행되어 고문을 당했다. 항고제기자(숫자는 사건발생년도): 함주명(83·월남자사건), 김성만(85·구미유학생사건, 10년 복역), 황대권(85·구미유학생사건, 10년 복역), 정영(83·남북어부사건, 12년 복역), 박근홍(81·행불자 가족사건, 15년 복역), 박동운(81·행불자 가족사건, 14년 복역), 박수관(83·제일교포, 12년 복역), 김태룡(79·월남자 가족사건, 16년 복역)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범생농성중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는 3일 탑골공원에서 재취업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현재 민주당사 앞에서 범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등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구속증, 전국연합)은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백여명의 지역, 부문별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94년 전국연합 간부일꾼 학계수련회’를 갖고 ‘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과 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결의문을 통해 “김

전국연합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백여명의 지역, 부문별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94년 전국연합 간부일꾼 학계수련회’를 갖고 ‘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과 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결의문을 통해 “김

제임 등을 요구했다.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

(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1.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내에 만들어야 한다.
2. 위에 권고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전적으로 회생자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의료혜택, 주거 및 이와 비슷한 재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완전배상을 의미한다.
3. 일본이 전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가능한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회 정한 규칙과 결정에 충복해야 한다.

4. 위의 (2), (3)과 같은 권고가 계류중인 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그들의 권리나 주장에 손상시킬이 각 피해자 개인의 재활을 위해 미화 4만불 정도를 중도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5. 만약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현재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는 적합한 관계기관이나 UN의 전문기구에 이 문제를 계속 상정하며 법적 문제에 대한 권리있고 분명한 해석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권고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조약에 대한 해석’(예 : 한국정부의 65년 한일협약-번역자 주)을 제소해야 한다.

7. 연합군의 가맹국들은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재활과 배상을 올바른 조처를 책임있게 취하도록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8. 만약, 관련된 정부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여 94년 10월에 국제법률가협회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백골단 집단구타로 평화집회 아수라장

지난 3일과 4일, ‘진보세력 탄압중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대회’와 ‘서울철거민연합’ 창립대회가 백골단의 집단구타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3일 2시 탈꼴공원에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등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백골단에 의해 강제해산되고 17명이 연행되었고, 「서울철거민연합」(대표 양해동)은 4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종각을 거쳐 명동성당에 도착, 집회를 갖던 중 백골단에 의해 해산당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집단구타로 백병원에 실려갔고, 풍물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미가 짓기고 이빨이 부서지는 부상을 당했으며, 집회참가자

중 53명이 연행되었다.

불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또 다시 강력 항의

지난 1일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던 전기협 지도부 연행을 계기로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의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전기협 지도부 연행 규탄성명을 낸 데 이어,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승가대학 등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7개 단체의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등 37개에 이르는 불교계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각종 압력의 철회와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근로기준법 준수와 전기협 관계자들의 석방을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지령 243호, 문민적 정부의 ‘인권파수꾼’ 역할

인권주평, 기획기사 강화 계획

페스로 발행하는 일간 인권소식지 <인권하루소식>

이 창간 1주년을 맞았다.
93년 8월 4일 준비1호를 발간하고 같은 해 9월 7일 창간호를 냈던 <인권하루소식>은 일주일에 5회씩 발행(일·월요일 제외)하며 1년 만인 9월 7일, 지령 243호에 이르렀다.

국내외 인권정보를 각 단체 및 개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창간된 <인권하루소식>은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는 것을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때에 장애인, 노인, 여성, 교육, 아동의 권리 등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뤄 때로는 ‘이 것이 인권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국제인권소식’란을 마련하고, 94년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모니터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와 유엔기구의 인권에 관련된 사

항을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고자 했다.

<인권하루소식>이 전한 특종도 만만치 않다. 올 8월 26일 이후로 굵직한 것만 만 추리면 ‘경실련 주최의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제241호, 9월 3일), ‘남총련 사건 공판 본격 시작’(제239호, 9월 1일), ‘YMCA의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설’(제237호, 8월 30일),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제235호, 8월 26일) 등으로

보도기능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편집인 및 <인권하루소식> 기자들은 “인권전문지’ 역할을 다할려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앞으로 ‘인권주평’, 기획기사 확대 등으로 인권전문지의 이름에 걸하는 <인권하루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 안내 ◆

◆ 폭행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

·일시 : 9월 7일(수) 오전 2시
·장소 : 서울고법 302호

◆ 토론회-작은학교의 앞날과 교육개혁의 과제

·일시 : 9월 8일(목) 오후 3시30분-9시 30분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발제 : 농촌사회의 변동과 작은 학교의 앞날(김성수, 서울대 농업교육학)

·논평 : 이병수(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장)
조옥라(서강대학교, 문화인류학)

·주최 : 크리스챤 아카데미(766-7326, 7, 박상영간사)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씨 항소심 열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순심(40세)씨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방청인단과 변호인단은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책이 전무한 현실속에서 이순심씨는 20년동안이나 남편에게 구타당해온 피해자이다. 우리는 이순심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아내구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기위해서 항소”했음을 밝혔다. 시간은 9월 7일 (수)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302호이다.

국제사면위 한국·일본 지부 인권교육 행사마련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10일 오후 3시-6시 대구 중구청 강당에서 일본지부와 공동으로 ‘인권교육과 지구시민학습’ 프로그램을 갖는다. 이번에 소개될 프로그램은 개발교육 워크샵과 국제 이해와 인권교육세미나 등이다. 개발교육 워크샵에서는 남북문제와 어린이, 민간단체 활동 고찰을 내용으로, 국제 이해와 인권교육세미나에서는 인권교육방법론과 내용들을 유네스코와 유니세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발되어온 국제교육과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밖에 우리나라의 생활라방식, 문화, 전쟁 경험 등을 나누는 시간이 있다. 문의 : 053-426-2533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1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변호사 이덕우

편집주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덕우 변호사의 글에 이어 장애인, 양심수, 외국인 노동자 등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군부독재시대의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 뚜렷한 근거를 댈 수는 없으나 유신이나 5, 6공의 암울했던 시절과 흡사한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유신시절 국민 학생 때부터 국민교육현장을 달달 외우게 하고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관계 캠페인이 전국을 휩쓸 때 어린 나이에도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 아닌데”라고 느꼈던 기분 같다고나 할까.

냉전체제의 붕괴와 전세계적인 화해와 공존의 흐름과 국내 정치상황을 비교할 때 더욱 참담한 느낌이다. 이념과 체제보다는 각국의 이해 관계에 의하여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는 급속하게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변화하고 있다.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듯 하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평화공존의 길을 걷자고 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임연한 현실을 왜 우리 정권 담당자들은 외면하려는 것일까.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여 가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해묵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정국을 불안하게 물고가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많은 국민들은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한 눈으로 정국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다.

언론, 사제들이 반복 이데올로기

확산에 앞장서

지난 3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해화 신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이른바 북한의 불바다 발언 파문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반복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당국이 비공개 회담에서 나온 말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시키자 외신기자들은 국제 관례상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양측 대표들의 신경전 끝에 나온 말을 앞뒤 상황을 모두 자르고 북한 대표의 한두마디 말 중 “불바다”라는 부분만 골라 강조하며 일제히 보도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려 하였다.

안분위기를 선도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선도적 역할은 철도파업, 조문논란, 한총련폐후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단적으로 박홍총장의 근거가 불투명한 발언을 극찬하며 “박총장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제2의 박총장이 필요한 때”라는 식의 민간(?)캠페인을 주도하며 정국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다시보는 로마병정, 백골단

언론의 선정적이고 이성을 잃은 선도투쟁(?)에 휘말려 정부 당국은 특히 학생운동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남총련에 이어 한총련까지 일방적으로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181개 대학 주변에 233개 중대 2만 7천명의 병력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도모하는 길은 국가보안법 철폐로부터”

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의도대로 언론은 대대적으로 전쟁분위기를 고취시키며 불안을 증폭시켜 나갔다. 그러나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자 안보불감증이라는 등 일면 절없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 듯 격정하고 부추기던 정부와 언론이 의도대로 국민들이 동요하고 부유층 가정에서부터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자 하루 아침에 비난을 하고 나서는 촌극을 벌이고 말았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느냐고 머쓱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카터의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듯 하자 이러한 분위기가 일순 주춤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였던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조문논쟁으로 기세를 올리더니 박홍총장의 잇따른 주사파 발언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과거 정부 당국에서 의지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캠페인을 벌이면 마지못해 장단을 치던 언론이 오히려 공

을 배치하기에 이르렀고 140명의 학생을 수배하고 1천만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소위 문민정부에서도 우리는 5, 6공 때 신물나게 보았던 로마병정들과 백골단을 거리 곳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과연 5, 6공 때보다 학생들의 시위가 더욱 과격하여지고 정권에서 말하는 체제전복을 지향하는 쪽으로 극렬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5, 6공 때나 마찬가지로 정권의 유지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일까.

아울든 통계에 의하면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구속된 양심수는 634명인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44.63%에 해당되는 283명이다. 그런데 올 6, 7월 2개월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102명으로 그 전까지의 구속자 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공안정

(☞ 3면에 계속)

(☞ 2면에서 계속)

국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보안법 7조 ‘한정합헌’, 역사적 책임져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아직 그러한 분석 결과를 본 일이 없으나 정권의 위기 또는 실정으로 언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급증하고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환기에서 급격한 국가보안법 사건의 터져 나왔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물론 다수의 전이 한정합헌이라는 묘한 이론으로 위장하기는 하였어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합헌이란 판정을 받은 7조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약 90% 이상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창작노래곡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 교재와 태백산맥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흐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당장 북한의 남침위협이 커지거나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지 모르나 매파시즘의 열병을 앓고 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매파시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린 것을 보면 이해할 지 모르겠다. “매파시는 반공의 명분에 해를 입혔으며,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당한 노력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도모하는 길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국가보안법 철폐주장도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며 국가보안법 7조 위반(북한의 활동에 동조)으로 몰릴지도 모르겠다. 지금이 신공안정국이라는데,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농협 011-01-404581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예금주 : 서준식
예금주 : 서준식

두를 했을 때에도 언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 휘두를 수 있고 따라서 휘두르도록 만들고 만는 일종의 마성을 지니고 있다. 제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천성이 선량하여도 손쉽게 눈에 거슬리는 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귀찮고 힘들 뿐만 아니라 승패가 불분명한 토론과 협상을 할 것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란 한낮 장식품에 불과하다.

체제의 건강성과 국가안보는 희일적 인 사고를 강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피를 보았던 우리가 어떻게 40년전 미국에서 밟았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일까. 한 대학 총장의 뚜렷한 근거가 없는 발언에 전국민이 매카시에게처럼 놀아나 이성을 잊고 평기애에 들며 날뛰어야만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피와 젖음을 지불하여야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새로운 사고와 견디는 비판을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일까.

진정 지금 이 순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을 누구일까.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당장 북한의 남침위협이 커지거나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지 모르나 매파시즘의 열병을 앓고 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매파시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린 것을 보면 이해할 지 모르겠다. “매파시는 반공의 명분에 해를 입혔으며,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당한 노력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국민들의 참여와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형선고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구성 자체가 어찌 되었건 재판관들의 성향이 어떠하였건 위 결정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은 칼자

서울지하철노조 재파업 경고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 실형 1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석치순)는 6일 오후 2시 군자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부터 시한부 재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하철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파업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 쪽과 4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공사 쪽이 노조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해 교섭이 결렬돼 조합원총회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노조는 공사 쪽과의 협상을 통한 파업유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공사 쪽의 태도로 볼 때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사태해결을 위해 △고소고발 취하,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징계 철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이미 합의된 사항의 이행 등 5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수철 판사는 6일 부산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노조위원장 강한규(37)씨 등 노조 간부 13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부위원장 이강근(37)씨 등 7명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프락치혐의 사망 관련 4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3부 김홍일 검사는 6일 경찰의 프락치 혐의를 받아 학생들의 조사를 받은 후 병원에서 사망한 전귀희(38)씨 사건과 관련, 고려대학생복지위원회 정연철(25, 심리3)씨를 상해치사 및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학교 이광훈(21, 경제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복, 황인성씨 6일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6일 지난 8월에 열린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지난달 9일 구속된 범민족대회 남측주진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57,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집행위원장 황인성(42,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경찰, 진술할 내용 '가르쳐' 주며 조서 받아

밀실수사 끝에 청소년단체 회원 3명 구속

지난 9월 2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대공분실은 구로·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단체 「샘」(회장 고영국, 구속증) 회원 등 13명을 「샘」 사무실, 거리, 집, 학교 등에서 연행·조사한 끝에 9월 4일 고영국(21)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샘」 회원 추교준(2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연행 당시 이들과 같이 있었던 고등학생 4명은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와 관련 최은철(21, 부회장)씨 등 2명을 수배중이다. 경찰은 가족과 친지들이 서울시내 경찰서를 찾았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 할려고 했음에도 4일까지 가족에게 소재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연행된 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육인동 대공분실 밀실에서 3일 오전까지 잠을 전혀 못자게 한 채로 이적 표현물을 읽었는지, 「샘」의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4일

풀려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특히 조서를 작성하면서 문영기(19, 구속증)씨에게 「주체혁명의 조직관」이라는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으로 공부했다고 적어라"고 강요하고 또 위 책의 내용을 일부 읽어주며 받아 적게 하기도 했다. 또 최장민(16, 구로고 1년)씨에게는 "문영기가 김 주석을 애도했고 '김 주석은 좋은 사람으로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을 것을 강요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한 인식부분에서도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이다"라고 쓰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이 어떤 것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생을 상대로 사건을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조작 한다는 혐의를 받으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진상파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아무개(24,

◆ 행사 안내 ◆

□토론회-작은학교의 앞날과 교육개혁의 과제

- 일시 : 9월 8일(목) 오후 3시30분~9시 30분
-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 발제 : 농촌사회의 변동과 작은 학교의 앞날(김성수, 서울대 농업교육학)
- 논평 : 이병수(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장)
- 조록라(서강대학교, 문화인류학)
- 주최 : 크리스챤 아카데미(766-7326. 7, 박상영간사)

어 놓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려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단체 「샘」은 15명 정도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고등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풍물, 노래모임, 경당 활동 등을 하여 왔으며 지난 92년 7월 창립되었다. 구속자 : 고영국, 문영기, 김용오(21) / 수배자 : 최은철, 나기석(20)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과 인준청문회 마련과 더불어 임명될 재판관 자격자를 경력15년 이상의 법학교수에게도 개방해야 하고 비법률적 전문가에 문호를 개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킬 것을 말했다. 민변도 최소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가시화하여 국민의 검증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대한변협 상임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안우만 전대법관의 헌법재판소장 임용 반대와 스청와대, 국보위등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포함시킬 것을 말했다. 민변도 최소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가시화하여 국민의 검증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할 법대협 창립 7일 법률피해자, 전문가등 참여

검찰·경찰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법률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피해 대책협의회(법대협)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피해자와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법률피해자와 법률 전문가 등 3백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법대협은 앞으로 불공정한 수사와 소송진행 및 위헌적인 법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등 사법감시활

현대중공업 회사, 고소·고발 취하등 약속 안지켜 전노대, '노조집행부 와 해음모'

지난 8월 23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회사측 사이에 합의를 본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취하등을 회사가 지키고 있지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측은 신의현 전무등 개인이름으로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취하할 수 없다고 버티는 한편 상여금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교섭상의 구두합의를 과기하고 있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양규현등)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전노대의 주요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를 왜해시키겠다는 목적이 깔려있고 민주노총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상태에서 남편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연행해가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것에 분노"를 표했다.

연행자 명단 : 이병석(28, 회장), 김영옥(32 사무국장), 이영숙(31 교육국장), 송경숙(30, 회원), 장석철(34, 회원), 김의중(34, 회원)

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재판부는 "20년간 2남 1녀를 낳고 살아온 부부관계에서 부인이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을 참지못하고 저지른 행동이다", "평소에 부부금슬이 좋았다고 들었다"는 등 피고인의 처지를 남성중심적인 입장에서 보는 발언을 자주 해 방청인단으로부터 애유를 받았다.

결의문

(전략) 대한변협 상임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승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대법관은 지난해 사법부 인사개혁논의 기간중에 위 1항 일부관계전역과 개혁의지 및 정직성에 대한 의혹으로 법조 안팎에서 이론바 정치판사로 지목되어 공직사퇴 요구의 대상인사로서 위 임명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3. 새 헌법재판소장과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과거의 행적에 의하여 그 사명과 임무를 짊어져 전증하여 헌법수호, 법치주의 실현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와 문민시대에 맞는 개혁의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

4. 우리는 위에 제시한 기준에 저촉되는 인사가 임명될 경우 모든 재야법조인이 충단결하여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1994. 9. 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정부 3년 소급 보상금 지급 약속 지키지 않아 시민모임 찾아주기 나서

12일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이상경·박무영, 시민모임)은 보상금 없이 추방당했던 방글라데시, 네팔 산재자들 23명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노

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노동부는 지난 2월 7일 경실련 농성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산재보상금을 3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7개월 이 지난 지금도 적극적인 노력을 사실상 하고 있지

인터뷰 : 김재오 사무국장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93년 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인 노동자의 산재율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소급적용 3년동안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만도 9천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 산재노동자를 위한 산재요양 명문접수양식조차 없다. 정부의 발표가 있기전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은 응급치료만 받고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이다. 이들은 귀향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한국에 올 때 진 빛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싶었다.

- 운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난 6·7월 네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한국에서 산재당한 노동자들을 찾아나섰다. 노동부는 한국에서 산재당한 노동자에게도 산재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강제추방당한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당연히 주체 한국대사관과 공공방송등 홍보활동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정부는 귀향 산재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각국으로 보상금을 송환해야 하며 보상을 위해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앞으로 계획과 바램은?
일단 보상금 지급요청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정부의 성의있는 입장은 기다려 보겠다. 각국에는 이미 서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스리랑카, 인도등 5개국에 산재 당한 후 귀국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것이다. 올 10월경에는 중국과 필리핀, 파리스탄을 방문할 계획이고 이곳에도 산재자 모임이 결성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다발적인 국제적 집회도 열 생각이다.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의 노력이 정부의 외국인 산재노동자의 보상금 지급과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망은?
최근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노동자의 이동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내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부국과 빈국사이에 경제윤리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노동부장관 면담 및 엽서보내기 운동, 포철해고노동자지지방문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우만·정경식씨 현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대한변협」

안우만 전대법관과 정경식 대구고검장의 현법재판관의 임명 움직임에 대해 재야법조계와 관련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대한변협」은 임명강행시 사퇴를 위한 모든 행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흔 있는 인사들에 대한 현법재판관 임명은 현법재판소의 기능을 허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전진과 개혁의 추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변협은 7일 결의문을 통해 안우만 전 대법관을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 송고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대표적인 정치판사로 지목하고 현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된 정씨는 대표적인 ‘공안검사’이다.

**노동계 연석회의 구성
포철유령노조 해산 나서**

지난 9월 9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정인숙(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회장), 신철영(경실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사무처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등 노동계 및 시민운동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철유령노조해산과 올바른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시민 노동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였다.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서 “노동부가 해산시점이 지난 노동조합에 대해 소집권자의 지명을 허용하여 유령노조를 연장하려는 포항제철측에 새로운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유령노조 해산을 방지하는 직무유기로 다른 없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한기위 전에 은행으로 발걸음을 돌려주세요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진상(사회학,『한국사회 이해』중 「한국사회 이해의 기본시작」집필) 교수는 “한국사회를 보는 틀로 맑스주의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집필한데 대해 맑스주의 이념을 선동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12시간의 조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상환(경제학,『한국사회 운동의 과제와 방향』) 교수의 경우 ‘사회운동을 통해 폭력선동을 한 것 아닌가’는 식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했다.

있는 아들 기훈이의 결혼식 등 바쁜 일을 치르고 나면 계속 글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의 사법처리 반대
경상대 교수 3백 11명

『한국사회 이해』집필자 6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여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경상대 박우동(51·사회과학대 심리학) 교수 등 3백 11명은 사법처리반대서명을 마쳤다.

전체 교수 5백여명 중 62%가 넘게 참여한 서명은 13일 일제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총장, 장관, 대검찰총장, 교육부 상임위원장, 각정당으로 보내졌다.

서명에 나선 교수들은 『한국사회 이해』 사태는 학문의 다양성에 대해 공안당국이 사법처리를 시도한 데서 비롯되었다면서 지난 한 달간의 논란과 진통을 겪으며 이 문제는 대학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법처리는 개강이 되어 집필 교수들이 이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학사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따라서 교수 7명에 대한 사법당국은 모든 사법처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포럼은 강문규(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씨, 서대원(외무부 국제기구심의관) 씨가 발제한다.

바로잡습니다
13일자 2면 「전국연합 채규업씨는 최규업씨입니다」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현재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잊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종석(전 광주고등법원장), 민자당이 추천한 신창언(부산지검장)·김문희(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씨 등이며 「대한변협」 등에서 정치판사로 임명철회를 요구해온 안우만 전대법관은 제외되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13일 아침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임명은 헌법재판소 구성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편집자주 제2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는 12일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구체적 인물에 대한 임명거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요구까지 다양한하게 쏟아진 의견들 속에서 제2기 헌법재판소의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국회동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 상황에서도 각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유효하다고 생각되어 요약해 실는다. 단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논평

(중략) 우리는 임기개시를 불과 2,3일 앞두고 대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전격적으로 지명 또는 추천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관 임명문제가 미리 공론화되어 그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계속 목살되는 악폐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안우만, 정경식씨를 지명한데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개인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위 두 사람은 지난 권위주의 시절 사법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에 역행한 대표적인 정치판사와 공안검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지난해 사법개혁을 요구하던 국민을 향해 “정치판사는 없다”고 강변하던 안우만씨의 몫염치한 모습이나 지난 대선 때의 이른바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정경식씨의 전력을 벌써 잊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지평에 대해 새삼 의혹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유독 김문희 재판관만이 유임되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걸어온 길을 반추해 볼 때 과연 검찰 출신이 두 명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특히 신창언씨는 박종철군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거명되는 인사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조승형씨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평판을 떠나 과연 민주당에서 당내나 시민사회에서의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끝의 추천이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제2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거의 직업법관과 검찰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그것이 헌법수호와 관점에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를 통합할 헌법재판판에 파행적 요인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재야 법조인이나 법학자의 진취적이고 열려 있는 신선한 헌법관이 반영될 기회가 봉쇄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1994.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중략)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 김문희 재판관이 제임용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 할 것이다. 과거 행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얻은 인사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안우만 임명철회 내용 중략). 더구나 공안검사로 인권침해의 선두에섰던 정경식 대구고검장이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국민의 인권보장 의지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정경식씨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2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정한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위 두 인사(안우만·정경식)에 대한 임명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수호에 보다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대한변호사협회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웅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다르다고 말하며 “경찰의 강압에 의해, 다른 사람들도 이미 진술했다는 얘기에서 체념적으로 경찰조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의 진술서 ‘부동의’에 대해 재판부는 류낙진씨를 증인신청할 것을 검사측에 제시했으며 검사는 류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되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진술하게 해줄 것과 류씨의 1회 공판이 끝난 뒤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부산연합이 위하는 단체며 어떤 조직이나” “소속 단체인 부경총련, 전교조 부산지부 등 11개 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부산연합이 지역현황과 민주개혁, 민족통일축구등의 일을 한다고 대답하자 “그런 막연한 일을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연합이 장기수나 간첩으로 알려진 류낙진등과 자주 접촉하는 이유는 뭐냐”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유독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인 데” 등의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는 지난 남총련 1회 공판에서 UR개방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펴 재판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본지 239호 참고). 다음 재판은 10월 19일(수) 오후 2시.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옹·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노트로 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판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4일 전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장 이기언(26), 전 전북대생 이상희(23)씨 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등이 가지고 있던 책과 노트등이 용·공·이적표현물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 문배의 공정성, 현실모순 등에 대해 비판적, 학

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등은 전북대 정의과 사회학과에 재학중이던 지난 91년 1월 『변증법적 유물론』, 『세계질학사』, 『사적유물론』 등 10여권의 사회학 서적과 마르크스의 계급론 및 전략전술론 등을 요약한 학습교재를 소지, 텁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남총련 공판때도 “쌀개방은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된 이영기·유성찬·박화국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화국(29)씨는 공소장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씨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류낙진씨와의 관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류씨로부터 구국전위에 대한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다만 류씨가 강령과 규약을 보여준 적은 있는 데, 이는 일반적인 강령과 규약으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일을 하고 있어 참고로 보여준 것이다”고 대답했다. 특히 당시 본 강령과 규약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본 것과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 원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한가위 전에 은행으로 발걸음을 돌려주세요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종)은 15일 성명에서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문민정부가 과거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인권을 억압한 반개혁적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것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헌법수호의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여야의 당리당락적 이해에 좌우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조 및 시민단체에서 극력 배제를 주장해온 정경식 재판관이 포함된 데 대하여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경식 재판관은 유신체제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 및 학생들을 긴급조치 위반사범으로 몰아 구속, 소추했고, 5공화국 출범 전후 국보위에서 비민주적인 민권억압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정경식 재판관이 “법률가의 양심과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했다.

유초하교수 수배해제촉구

「유초하교수와 진보운동 탄압에 반대하는 교수모임」(공동대표 양재혁·안현수·윤구병)은 15일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사건과 관련, 지명수배조치를 내린 유초하교수에 대한 수배해제조치와 자유로운 학문활동보장을 요구했다.

연락처: 81-3-3364-2895
문의: 정대협(263-2802)

◆ 인권간행물 ◆

□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 한국사회와 지속 가능한 인간적 사회개발·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주요내용: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배경, 특성, 의제와 쟁점, 준비과정/사회개발정상회담 2차 준비위원회 민간단체 참가보고서(구성과 진행, 주요행사일정, 주요내용과 쟁점, 한국 민간단체 준비에 대한 제안, 향후 행사일정) 등

□ 사회개발정상회담 자료모음집-제2차 준비위원회 관련자료(영문)-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주요내용: 사회개발정상회담 소개 및 안내문서(사회개발정상회담 개최배경 및 의제-유엔 홍보국, 유엔주도의 각종 세계회의의 현황과 민간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소개)/유엔문서(선언문과 행동계획 초안 및 1차수정안)/정부와 유엔기구 문서(한국정부대표의 빈곤 및 고용에 대한 발언문)/민간단체 입장 및 발언(주요 민간단체의 입장)/ESCAP과 아태지역 NGO 문서 등

□ 국제앰네스티(94년8월)-한국지부(053-422-1956)

·주요내용: 특집1-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이모저모/특집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앰네스티/집중기획-자유의 최일선(튀니지)/국가별 캠페인: 압제와 죽음의 땅, 둉티모르/주제별 캠페인: 실종과 정치적 살인에 대한 캠페인/난민캠페인: 스리랑카 난민/인권교육: 난민을 위한 활동 등

□ 열림터 개설식 자료집-성폭력상담소(576-7127~8)

·주요내용: 열림터를 열며 열림터의 필요성과 기능-성폭력 피해 후유증은 이렇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본 열림터의 필요성, 열림터는 이렇게 운영됩니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열림터 운영위원 소개)

□ 나눔터 제12호(94년 8월)-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이런 일을 했습니다/여기는 상담실/이렇게 도왔습니다-후유증/더 좋은 상담을 위하여/기획- 성희롱, 바로알자/특집-서울대 조교 성희롱 판결을 둘러싼 매스컴 태도 분석(최상진) 등

□ 우리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및 규약, 규정집 - 대우자동차 노조, 032-520-2942~4)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의 성립과정/노동법 개정의 정치·경제적 배경/ILO공대위의 노동법 개정 협약요구안/노동관계법/노조 단체 협약의 여러 규정 및 규약 등

□ 한울노동법강좌-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기업의 조직변경과 근로관계 이전/판례모음 및 판례해설 등

□ 노동운동(94년9월)-도서출판 승리(766-4803)

·주요내용: 94상반기 노동자투쟁의 평가와 교훈(김연환 등)/기획: 하반기 정세와 노동자투쟁의 기조(박용식), 노동법개정 투쟁 이제는 전조합원의 투쟁으로(박승호) 등

□ 노동과 건강-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주요내용: 특집-정부의 산재예방정책/저비용고효율 산재예방기법의 보급에 대한 각계의 의견(강순중등)/개정업무상 재해 인정안에 관한 검토(노동과 건강연구회 정책실)/의보 연대회의에 듣는다(조홍준)/지상증례-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체계구현에 관한 공청회 등

□ 어깨동무 9(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821-3212)

·주요내용: 제5기 이내창 열사기체를 다녀와서/하반기 추모사업회 사업방향 등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자는 27명이다. 현재 재취업을 희망자는 6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2회 시민인권상 양길승
서울변회 23일 시상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제2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양길승(성수의원 원장)씨를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9월 23일 오후 6시 30분 인터컨티넨탈 호텔.

한가위맞아 찾아간 전해투 농성장

‘가을투쟁’ 재정 마련 한창

“집에 내려가면 겨울옷 챙겨와야지요”

일본의 「류정식씨를 지원하는 회」(대표 와다 데루오) 동경대교수, 류정식회) 회원들은 14일 입국하여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류정식(재일정치범, 무기징역, 75년 구속)씨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92년 「류정식회」가 생긴 이래 1년에 3번정도 방문했으나 그때마다 번번히 같은 이유로 되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이마오가 후미고(63·「류정식회」사무국장)씨는 “비록 면회가 되지 않아도 류씨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리라 생각된다. 갑작스럽게 밖에 나뉘어 있어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 교도소측에 일본에서도 류씨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면회가 않되었지만 ‘다음에는 면회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마오가씨는 민주당 인권위등에 류정식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단체들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했다.

원진문제 노동부 왜곡

9월 14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 남재희 노동부장관은 “93년 7월 5일 원진례이온 폐업당시 취업자는 811명, 직업병으로 휴업금

여를 받은 자는 345명, 취업 확정자 60명, 기타 자영업 종사자는 300명”이라 밝혔다. 그러나 원진례이온비상 대책위(위원장 이홍주)측은 “폐업 이후 55명만이 휴업 급여를 받았고, 실제 취업

작년 한가위에는 등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내년 추석엔 떡값 받게 되기’ 희망했던 전국의 해고노동자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94년 9월 16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에 자리잡은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임시위원장 강준철 코리아타코마 해고노동자, 전해투) 사무실은 분주히 움직이는 노동자들로 활기차 보였다. 투쟁소식란엔 ‘전해투 재정마련 추석셋트’ 품목이 적힌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전통건강선물셋트, 녹기삼 셋트, 북한 명주등을 가득싣고 전국 대공장이나 노동조합, 수도권 단위노조가 있는 울산·마산·창원·부산·인천 등지를 하루가 멀다하고 돌아다닌다고.

막 배달을 마치고 사무실을 들어서는 안경호(임시 대의 협력국장)씨는 이 사업이 ‘가을투쟁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투는 매달 약 1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되어 재정걱정없이 투쟁에만 전념하기 위해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사활을 건’ 판매라고 덧붙였다.

1년에 몇 번 못찾아가는 집이지만 올 추석엔 본부를 지키는 몇 명을 제외는 모두 내려갈 준비로도 바쁘다. 여름옷을 가방에 넣고 다시 겨울옷을 챙겨와야 한다는 말에도 생기가 넘치는 것은 기자의 착각인가.

작년 이맘때는 마포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올해도 연휴기간 투쟁은 계속된다. 포항제철, 의료보험, 풍산금속 해고자들이 텐트농성을 벌일 계획이고 있다. 철관·한국화학 등 구속동지 면회현황이 지금의 전해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본격적 투쟁에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라는 인사와 함께 안경호씨는 “올가을 투쟁에는 박수도 좋고 ‘지지’도 좋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며 웃어보였다. (김수경)

<인권하루소식> 252호는 9월 27(화)에 발간합니다.

풍족한 한가위 되십시오.

단체탐방 31 /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탈출을 시도하는 숨막히는 영화를 보면, 높은 감시탑에서 빙빙 돌아가는 감시의 빛을 살 새 없이 쏜다. 그 빛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란 없고 '자유'는 불가능해 보인다. 방어할 수 없는 칠혹같은 어둠속에 '아찔'하게 비춰지는 빛! 그 빛과 대조적인 빛이 여기에 있다. 철조망에 둘린 조용하고 따스한 촛불 하나! 그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상징이다. 앰네스티의 활동은 간단히 말해 대중적인 관심의 등불을 태우는 것이다. 이를테면 고통을 가하는 정부당국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실천이 모아졌을 때 그것은 권리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주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의 행동을 개선하도록 촉구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61년, 자유를 위해 견배한 죄목으로 7년을 선고받은 두 명의 포르투갈 학생이 있었다. 이들에 관한 보도를 본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넨슨씨는 불의의 회생자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항의 편지로써 정부관계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었다. "사면을 위한 탄원, 1961"이라 이름붙인 이 캠페인은 정치적·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수감된 전세계 수인들의 석방을 위해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탄원을 벌이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하였다. 이 수감자들은 '양심수'로 불렸으며 이로써 이 새로운 어휘는 국제적인 명칭이 되었다. 이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불렀으며 이로써 단순한 폭로를 위한 노력으로 시작한 일이 영구적인 국제적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앰네스티의 시작이다. 오늘 날 1백50개국의 백만이 넘는 회원, 지지자, 정기적 후원자들이 앰네스티 운동을 지원하며 이들중 6천개 이상의 지역그룹들이 전세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해마다 이 운동은 수천에 이르는 인권침해 회생자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탄원을 보내고 있고 자료조사와 재판감시 혹은 정부당국자와의 접촉을 위해 다수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공식적인 관계를 확립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앰네스티의 활동을 국내의 정치적 목격에 이용하여 지난 '아·태지역 앰네스티 회의'의 서울 개최시 북한인권문제만을 떠들어대기도 했고, 똑같은 언론이 93년에는 '비전문가의 인권판정'이라는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상을 비전문가 몇명이 그렇게 평가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앰네스티 발표를 깎아내린 예도 있다. 덕분에 앰네스티가 한국에서 유명해졌다고 웃어넘기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구시내에 자리한 지부사무실의 문에서도 예의 그 따스한 촛불의 빛이 먼저 반겨주고, 세계곳곳에서 그 빛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양심수들의 얼굴포스터가 가득하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70년대 중반, 몇몇 재야인사와 나길모신부(외국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국내적으로는 유신체제에서 범국가단체로 인식되어 탄압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밖으로는 자국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앰네스티 지침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런던국제사무국과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중 80년에 주요 간부가 구속되면서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했던 모임이

다 깨질 수 밖에 없었다. 82년 다시 재건을 시도했으나 탄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소극적이고 친정부적인 활동으로 전락했으며 그 당시 민정당 간부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내는 회원이 주름잡는 비민주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활동 그룹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부사무실만 서울에 존재했다. 이에 허창수신부(독일인)와 배영근신부(벨기에인)를 중심으로 앰네스티 본래

정신과 민주적 운영을 회복하자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국제사무국에 탄원서도 냈다. 이에 친정부활동과 앰네스티 규약을 어긴 것으로 판명

되어 85년 서울지부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이때부터 지부는 없이 그룹활동이 시작되었다. 앰네스티 정신에 충실히 실질적 활동을 하면서 그룹도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연락위원회, 조절위원회로의 발전, 92년 사무실 운영 재개, 93년 3월에 지부로 재승인받게 되었다.

그룹이란 앰네스티 운동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회원들이 일상적인 지역사회속에 근거를 두고 참가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그룹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며 폐쇄되면 그 자리는 비워둔다. 현재 서울에 4그룹(직장인 중심), 17그룹(여대생중심), 21그룹(서울대학생모임) 등이 있으며 대구에 2,10,11,13,15,16,18,20그룹과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있고 대전에 12그룹(변호사모임), 예비그룹(주부모임), 마산창원에 14그룹, 전주에 19그룹 등 한 그룹에 평균 8-10명, 총 200여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룹은 규모가 커지면 나눠지게 되어 그룹을 항상 새롭게 하고 '활일'이 항상 있게 된다.

현지부(지부장 허창수신부)의 조직은 총회와 집행위원회(그룹대표의 모임),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사무국장 오완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무위원회는 캠페인(국가별, 주제별), 사행제도, 난민, 인권교육, 긴급구명, 소식지, 기금조성, 언론담당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한국지부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지부이나 아태권에서는 중간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한국지부만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지부는 없으며 그속에서 일군 성과를 볼 때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앰네스티활동규정 중 '자국관련활동'규정-앰네스티회원은 회원자격으로서는 자국내의 인권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거나 관련행동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사람들이 '우리 문제도 심각한데……'라는 반문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앰네스티의 이름으로 자국내의 인권침해 반대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전세계의 동료회원들이 그러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배가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자격의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앰네스티 회원의 수는 명목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실제활동가라는 점에서 힘이 있다. 이들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들이 편지를 쓰고 탄원을 하고 피켓을 드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류은숙)

706-600 대구 경북체신청 직영우체국 R.C.O. Box 36호 전화 : (053) 426-2533 팩스 : (053) 422-1157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인권하루소식

샀다.

양길승씨는 개인적 병리뿐이 아니라 이를 구조화하는 사회적 병리에 대한 치열한 대결의식을 거친 열린 의식의 소유자로 긴급조치위반으로 제적, 복학, 제적과 투옥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양씨는 85년 아일랜드에서 의사면허 취득이후 86년 한국의사시험에 합격하였다.

7기 장애우대학 개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제7기 장애우대학을 지난 9일 시작했다. 이번 7기에는 62명이 등록신청했고, 매주 금요일 연구소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5만원, 지금도 등록이 가능하다.

강의내용 : 장애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1·2(9월30일/10월7일)/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과 방향(10.14)/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10.21)/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과 과제(10.28)/장애인교육의 이론과 실제(11.4)/언론과 장애인복지(11.8)/한국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과 전망(12.9) 등 문의전화 : 521-5364

여성의 전화, 강서지부 개소

'한국여성의 전화' 강서지부가 지난 24일 문을 열었다. 강서지부는 교육원과 상담실을 운영하며 부설교육원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된다.

일반전화는 694-4050~1, 상담전화는 263-6464~5, 601-1411

주소 : 강서구 화곡3동 1013-20 서린상가 2층

유가협총회·시민인권상·장애우대학등 인권단체행사 줄이어
유가협 신임회장 선출, 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인권침해사례 진상규명 결의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지난 23일 오후 성균관대학교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박정기(고박종철열사아버지)씨를 선출했다. 임기는 올 9월부터 96년 8월까지이다.

5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신입회원 승인, 8차 회기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승인, 9차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등의 순으로 치뤄졌다.

유가협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내부 조직력 강화, △의문사등

회장은 만남의 집이 만들 어지기까지 과정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다. 낙성대 만남의 집은 대지 100평에 건평 55평 2층집으로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건축을 담당했다. 이곳에는 장기수 이종, 이종환, 조창순, 최남규 선생등이 기거할 예정이다.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양심수 가족후원회'(회장 권오현)는 출소장기수들을 위한 만남의 집을 지난 9월 24일 개소하였다.

이번 집들이에는 1백50여명에 이르는 장기수선생님, 인권단체 관계자, 국회 의원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오현 후원

◆ 공판안내 ◆

9월 27일(화)

- 박용전, 국보법, 2시, 320호, 속행, 3단독(판사 최철)
-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413호, 결심, 민사13부
- 황식영(대법 파기환송), 10시, 404호, 고법 합의5부

9월 28일(수)

-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
- 김민철, 국보법, 10시, 321호, 선고, 6단독(판사 하광호)
- 신광수등, 국보법, 2시, 424호, 9단독(판사 이길수)
- 이순심, 남편살해혐의, 2시, 302호, 항소심

9월 29일(목)

- 김남곤, 국보법, 10시, 321호, 선고, 5단독(판사 백현기)
- 박현용, 국보법, 10시, 425호, 선고, 4단독(판사 박성직)
- 김병묵, 국보법, 4시30분, 320호, 3단독(판사 최철)
- 문국진씨 국가손배소송, 2시, 559호, 민사13부

9월 30일(금)

- 최은열, 국보법, 10시, 317호, 선고, 1단독(판사 변진광)
- 김상현, 국보법, 10시, 421호, 선고, 8단독(판사 조승곤)
- 신학철, 국보법, 3시, 422호, 속행, 항소5부

노민문연 회원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이적단체 규정에 수사 초점

27일 새벽 5시부터 7시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 소속 회원 및 전활동가 연성수씨등(41세) 8명을 각자의 자택과 노민문연 사무실에서 긴급 구속, 흥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민문연 회원 이승구(28)씨를 사무실에서 연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박스 분량의 자료등을 불법으로 압수하고, 이씨의 자택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늘 오후 접견을 한 김제완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는 노민문연 창립시 활동강령이나 규약등을 이적성으로 몰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연성수, 임창기, 이철우씨 경우 2년전에 단체활동을 그만 두었다며 "몇년 전의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최근의 공안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민문연은 서울지역에 구로, 중부지역 등에 지부를 둔 공개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행자 명단 : 연성수(전 서울노동자민족운동연합 의장, 전국노동자문화운동 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이철우(32세), 임창기(31세), 박원곤(30세), 김미정(29세), 김동미(29세), 이승구, 박병철(25세)

청소년단체 「샘」 사건 진상규명과 고등학생 인권유린 실상 폭로 기자회견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2시
·장소 : 영등포 성문밖교회
·주최 : 청소년단체 「샘」

끌어온 국민계몽을 통해 정보접근권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내는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씨 7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7일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황씨가 방북 당시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신상과 운동권동향 및 국내 핵관련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것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당국의 혀를 뱉지 않고 지난 89년 3월, 90년 8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과 만나고 범민련 해외본부 결성을 주도한 협의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1, 2심에 거국가밀 누설혐의증 널리 알려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었다.

◆ 인권간행물 ◆

□ 함께걸음

9월호-장애인권익우문제연구소(☎ 521-5364)

·주요내용: 특집- 접근권 그 현장을 가다/ 특별좌담-장애인 특례입학제도와 장애우 교육권 확보/초점-기업활동에 가로막힌 장애우 노동권리(전홍윤)/사람들-'빼빼수첩' 만든 청각장애우 추영무씨(이태곤)

□ 운동본부소식 9월(통권7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주요내용: 권두언-전전한 대미비판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이장희 교수)/이달의 미군범죄-평택 최일재씨 추락사건 등 4건/기획연재-한미행정협정! 이것이 문제다/운동본부소식

□ 후원회소식(통권35호)-민가협

양심수호원회(☎ 763-206)

·주요내용: 출소장기수를 찾아서-이구영선생님편/우리의 주장-학문·사상·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양심수가족을 찾아서-박동운님편/나의 살 나의 일터-낙성대 이야기(조명희)/목요일의 외침-스무살 동생을 옮아낸 국가보안법(김용민)

□ 다시 전선으로(94 여름)-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784-6037)

·주요내용: 텐트농성 수기(의보해협동)/옥중편지(신승인등)/기획특집-해고노동자 복직문제 해결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환점/공청회-해고문제해결을 위하여/투쟁보고(상월실)/93투쟁종합(전전국)/집중기획-93전해투 투쟁평가/국제연대 활동자료등

□ 통일맞이(창간준비2호)-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313-8201)

·주요내용: 상반기 사업보고/하반기 사업보고/통일교양-북미회담 합의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과제(정책연구실)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란 발표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할 사회복지제도의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위원회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이상목(송파구의회) 의원이 '지방의회의 현실과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 일본내 시설 방문 및 세미나 참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위원회 15명은 지난 26일 일본 장애인 시설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참여방안 △한·일 NCC 교류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김정렬 실장, 신용호 간사, 이태곤('함께걸음') 기자 등이 이번 방문에 함께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고등학생 100여명 징계 및 조사, 경찰 왜곡수사 28일 청소년 단체 「샘」 기자회견

청소년 문화단체인 「샘」은 28일 낮 2시 영동포 성문밖교회에서 「샘」관련 고등학생자치활동 탄압 중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샘」 사건후 고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경찰조사와 징계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샘」은 기자회견에서 「샘」 활동에 참가하고 UR 반대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공부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등 의 강요와 협박을 한 사실

"현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현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석·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현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주관으로 진행된 「현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정수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복적인 기질보다는 현법판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동안의 현법재판소 생활을 회고했다.

또한 변정수 전 현법재판관은 "6월 항쟁의 산물로 현재가 만들어졌지만 6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때 국민이 부여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안타깝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권위적인 법이 시정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사법감시센터에서 조사한 「현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기본권 보장과 현법 승인의 차원에서 현법재판

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으로 뽑힌 바 있다.

"어머니와 살고 싶다" 이순심씨 자녀 중인심문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이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2차 공판은 이순심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경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 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중인심리에서 이신애(만 23세)씨는 "어렸을 적부터 계속되는 아버지의 술과 구타로 어머니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나 이혼하지 않고 20여년동안 살아오신 이유는 어머니 자신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3남매를 고아로 만들고 싶지 않았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순심씨의 딸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의 맷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며 이제 나오셔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흐느끼며 얘기했다.

활은 어머니가 충분히 죄의 맷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며 이제 나오셔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흐느끼며 얘기했다. 지금의 심정을 묻는 말에는 "8개월 동안의 수감생

민주당 「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은 80년 10월 27일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것으로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회의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10월 27일에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었다. 따라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상정 의결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위헌 행위이며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은 무효이다.

국회도서관 의회법령자료실에 있는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국가보위 입법회의 1차 본회의는 80년 10월 29일에 개최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10월 27일, 28일 양일중에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27일 오후 1시경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소위 삼청동회의에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회의는 전혀 입법권이 없는 회의로서 현재 회의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이 회의는 12.12 군사반란부터 5.18 광주학살로 이어진 전두환 군부쿠데타 집단의 내란죄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회의다.

우리 민주개혁정치모임은 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의 위헌 현법소원을 현법재판소에 이른바 "국보위법"이 공포된 지 14년이 되는 10월 28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이며, 소위 "삼청동회의" 참석자 전원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 기구인 국보위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원천적 무효이며 따라서 80년 12월 31일 국보위 제14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국가보안법도 당연히 무효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그 위헌성이 분명해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기필코 이룩할 것이다.

1994. 9. 27.

황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는 손을 무척 떨었으며 숨도 고르지 못했고 제가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 채 눈이 허공에 떠 있어 미친 줄로만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달의 주제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장애물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증)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클리어 텍네이, 빼어르 로
베르트, 유카안자꼬(일본지
부)씨 등 3명이다.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캠페인 시작

앰네스티는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 캠페인에 들어갔다. 앰네스티의 여러 캠페인 중 1년에 두 차례 벌이는 주제중의 하나로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스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정책을 개선하고 실제 인권을 도모, 스국제사회에 인도네시아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 주의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인권단체는 물론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법무부인권과, 안기부, 국회의원 그리고 수인가족들을 만나 한국인권상황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인권단체 대표들과 AI가 그간 벌여온 한국 문제캠페인과 남북한 조사활동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언론의 웨보보도에 우려와 함께 전체 기자회견은 잡혀져 있지 않다. 이번에 방문하는 조사관은

성희롱 근절대책마련 활발

서울대 학내성희롱 실태조사, 학칙규정움직임 등 성희롱걱정 모임 결성예정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성희롱 공동대책위)는 5일 오후 3시 학생회관 옆 열린마당에서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우조교 승리를 확정화 시킨다. 이는 서울대 내의 성폭력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의 근절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성희롱 공동대책위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

를 '우조교 승리주간'으로 선정하고 우조교의 재판승리를 성원하고 학내에서의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의 근절대책 등을 위한 예비작업을 한다. 성희롱 공동대책위는 9월 30일에 '우조교 승리를 위한 장터'(오전 11시~오후 7시, 서울대 도서관 옆), '성희롱에 관한 토론회'(오후 3시, 서울대 학생회관 옆 열린마당)을, 재판부의 화학과 기기실 현장점증일인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학과 건물 옆에서 '우조교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또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 서울대 대책위원회」(성희롱 서울대 대책위)는 5일 오후 3시 학생회관 옆 열린마당에서 '학내 성희

통에 관한 공청회'

를

'우조교 승리주간'

으로

선정하고 우조교의 재판승리를 성원하고 학내에서의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의 근절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활동에서는

△

AI에서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와 최근 연행자에 대한 경보조사, △사형제도에 관한 조사, △행형제도를 포함해 재심절차, 사법권의 독립, 배상등 연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성희롱문화가 우아무개씨의 관계를 통해 사회 문제화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여성단체 대표, 교수, 전문인등 80여명은 10월 5일 오전 8시~10시에 YMCA빌딩 7층 자원방에서 (가칭) '성희롱문화를 걱정하는 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다.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1.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학내 성폭력의 발생 빈도, 유형, 피해자의 대응
-학내 성폭력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2. 학내 성폭력의 개념, 사례, 원인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내용과 방향
-가해자 징계와 재교육
-피해자 보상과 치료보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당국과 학생회의 역할

4.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조안

문의 : 서울대 총학생회(880-5222) / 여성민우회
(269-5763~5)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67년 제정되어 91년 첫번째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10월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가 마련한 '한미 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개정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중요성을 떤다고 볼 수 있다.

조재학(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씨는 작년 11월부터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에서 연구작업을 해왔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보다 평등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민변을 포함해 정부, 국회, 미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시민단체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금자변호사가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을, 장주영변호사가 '민사청구권 개정의 방향'을, 임재홍연구원이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최승환(수원대 법학과)교수가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례에 관한 개정방향'을, 한이봉변호사가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67년 2월 발효된 '한미주둔군협정'은 미군측에 지나치게 유리했고, 그 뒤 91년 개정된 문서는 본협정과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합의의사록을 전혀 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었다. 주제발표에 들어가기 전 이장희교수는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방향'에서 "그동안 한국국민은 재산권과 인권을 미군범죄자로부터 침해당한 면이 있었다. 이제 한미관계는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민정부는 협행 행정협정상 불평등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을 요약해서 개재한다.

<요약>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

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협행 형사재판권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한국이 갖는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해 행정적, 징계적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재재가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타협점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로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제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협정의 내용은 합의의사록에 의해 완전변질되어 한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의양해사항을 보면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를 일단 인정하고 개별적 사안에서 미군당국이 한국에 그 권리를 포기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개정 전 재판권 자동포기조항과 1차적 재판권 행사 대상범죄의 제한한 것에 비한다면 나아진 것이나 실제로 한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91년, 92년(1~8월)에는 전체발생 1천3백57명, 6백55명의 범죄인중 각각 18명, 6명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 그 배율이 1% 남짓했다. 또한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범죄가 미군측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든지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합의의사록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처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적 범위와 공무판단문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서는 협정대상자는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정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대상자의 국외범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

4. 인적범위: 주한미군에 전속적 재판권 있는 경우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으며 한국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권'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에게 재판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한미군당국이나 한국이 둘다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군군속이나 가족은 본국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나 얼마나 이송이 될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가 의문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자도 '군법에 따르는 자'로 개정하고 군속과 가족에 대하여 한국의 사법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형사절차상의 특례: 구금 및 인도 -우리가 요청할 경우 미군당국은 '인도할 수 있고' 특정사건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를 안해도 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피의자가 우리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측이 요청하면 우리의 의사나 사건의 중요성을 불문하고 즉시 인도하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법권과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6. 미군동 피고인의 권리: 미국관리의 참가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미국정부대표의 참여가 없다고 하여 일체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 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제한- 검사의 상소권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사법권침해의 불평등 조항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시찰권등- 규정 또한 지나치게 한국의 사법제도 및 행정제도를 불신하고 한국의 사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및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7. 미국측 사건처리의 관대화: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징역형을 받은 것은 90년도에 총 3백33건 중 불과 30건, 91년도에 총 7백33건 중 8건, 92년 1~8월까지 총 3천3백35건 중 불과 6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경책으로 처분되었다. 무엇보다 미군당국이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8. 경찰권 행사: 한미협정도 배타적인 경찰권 행사를 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되며 단지 경찰권이 주어지더라도 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 가족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행위가 우리 국민에게 침해를 주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경찰력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미호주협정에 비해 불평등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부속문서가 한미협정 본문보다 평등관계를 훨씬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협정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 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를 더욱 중요하며 사법제도 개선과 구금, 행정시설의 개선이 더 요망된다.

3. 시설 및 기지관련 행정조항 개정의 방향:

1)기지 및 시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기지 및 시설은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이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2)토지사용료문제-기지임대료:

민법의 임대차계약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의 재협상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3)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권의 확보:

최근 방글라데시 전역에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위협이 자행되고 있다고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 연맹(BANGLADESH GAERMENTS & EMPLOYEES FEDERATION, 연맹)이 알려왔다. 이에 따르면,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려는데 다름 아닌 '신성모독(BLASPHEMY)'이라는 이름으로, 71년 해방전쟁 이후 지금까지의 민주투쟁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있으며, 이를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등 나라전체를 대격전 속으로 휘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신성모독의 주요 회생자들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적 성취를 분쇄하려는 근본주의자들의 출현증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가 이 신성모독에 대항하여 연대의식을 발휘, 방글라데시 정부에 성명서, 항의서신 등의 캠페인을 벌일 것을 호소하였다.

편지보낼 주소 : PRIME MINISTER (수상)-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PRIME MINISTER'S SECRETARIATE TEJGAON,

DHAKA, BANGLADESH MINISTER //

MINISTRY OF LAW & JUSTICE(법무부 장관)-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BANGLADESH SECRETARIATE DHAKA, BANGLADESH

정대협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 반대 회견에 일본언론 관심 많아

정대협은 군위안부 해결을 위해 지난 14~18일 일본을 방문하여 민간 위로금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특히, 17일 '관민합동 위로금' 모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규탄행진을 가진 일본인의 호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인권하루소식

94년 10월

(제256호 - 제275호)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93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종)는 『인권보고서』 제8집(1993년)에서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의 인신구속사례,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

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 표현물 조항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삼정부가 아무리 제도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법이론적으로 위원법률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한, 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 가능성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 제정 움직임 등을 통

해 ‘독점대재벌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40만여명의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건강하게 살 권리, 400만이 넘는 장애인의 근로권과 생존권의 보장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변협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재취를 위한 투쟁이 현 정부의 등장을 결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중부문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를 제한하고 집회와 시위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런 민중부문의 차별화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강화하여 현재의 배분구조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민장애인 삶 사진전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명동 '유네스코 화랑'에서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사회의 그늘속에 자리워져 있는 빈민장애인의 삶을 보여주고 비장애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사진작가 이정률씨는 “한 번이라도 바다를 보고싶어 하는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사진속에 담았다”고 한다.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던 이씨가 1여년에 걸쳐 촬영한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 차례

제1부 1993년도 인권상황 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 ▷ 생명·신체의 자유 : 인신구속/수사상 고문 및 가혹행위/제소자의 인권/생명권/성과와 과제
- ▷ 표현의 자유 : 사상·양심의 자유/학문·예술의 자유/언론·출판·통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 ▷ 농어민, 도시빈민,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여성의 권리 : 농어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과 사회보장/노인, 장애인, 아동의 사회보장/여성의 인권
- ▷ 환경과 건강권 : 환경권/건강권
- ▷ 노동자의 권리 : 1993년의 주요노동지표/개별적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권리/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자의 권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노동자 및 미성년노동자의 권리

▷ 사법과 인권 : 수사기관과 인권/법조와 인권

제3부 특집

- ▷ 개혁정국과 인권 : 공직자 재산공개/사정/금융설명제/개혁정국과 인권
- ▷ 과거청산의 과제 : 을곡사업/12·12 사태/광주민주화운동/평화의 땅/김대중씨 납치사건
- ▷ 개혁입법의 과제 : 법률개폐 및 논의상황과 문제점/개혁입법의 과제
- ▷ 세계인권대회 참관기 : 인권회의의 배경과 준비과정/세계인권단체총회/세계인권회의/한국정부와 인권단체들의 활동

■ 부록

- ▷ 변호인 접견실 차폐시설 철거활동
- ▷ 대한변협이 발표한 각종 성명서 및 공문 모음
- ▷ 1993년도 인권일지등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23-27일 광주·서울·부산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유엔을 활용할 수 있을까.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유엔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문제와 관련, 국제인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이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광주·부산 인권단체 주최로 열린다.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10월 23일), 서울(24-25일), 부산(26-27일)에서 진행되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인권운동이 외국의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유엔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드리앙 끌라우드 졸라 국제인권봉사회 소장 등 2명의 외국인과 국내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강의 및 사례발표에 나설 이번 교육은 유엔인권기구 및 제도에 대한 소개, 민간단체의 국제인권제도 활용 사례연구, 한국인권단체의 국제제도

활용 사례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광주에서는 국제인권제도 소개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불처벌에 대한 논의 진행과정과 국제법적 고찰, 광주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활동방향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준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협의 장소영씨는 이번 교육에 대해 "지난해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하고 올 2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의 모니터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노동, 여성, 환경, 아동, 교육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공유하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씨는 "평소 인권문제와 유엔인권기구 및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노동, 여성, 환경, 아동, 교육분야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 관심있는 변호사, 연구자, 언론인, 학생들이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사전에 유엔인권관련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교육에 참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은 15일까지 가능하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애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애금주-서준식
국 만 015-21-0723-021 애금주-서준식

우조교 항소심 3차공판 조교임면권 싸고 공방

11일 오후 3시 서울 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는 서울대 신모교수에 의한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3차공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은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중인 최명언씨에 대해 피고인측 신문과 원고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명호씨는 신아무개 교수의 우조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교수는 NMR기기 담당 조교의 추천과 임명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면 원고측 소송대리인 박원순 변호사의

"NMR기기 조교의 경우 피고가 추천하면 대체로 학과장이 동의하여 그대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봅니다"라고 대답했다.

조교임용기간에 있어서 피고측은 "유급조교의 경우 대부분 1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자동면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아무개는 "1년이 지난 후 내가 힘들어서 사직"하였고, 전임자 조아무개는 "1년이 지난 후 연임이 되어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라며 유급조교는 대부분 1년임기후 자동면직된다는 주장과는 다른 증언을 한 바 있다.

성폭력위기센터 제3기 지킴이 공개모집

10.10-22 선착순 접수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성폭력위기센터 제3기 지킴이」를 10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 는 자원활동인 지킴이는

1, 2기에 걸쳐 1백20여명 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폭력위기센터에서 진행하는 24시간 상담활동을 30여명 의 전문상담원, 20여명의 사무자원활동가(나눔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맨 처음 내담자의 전화를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경찰이나 법원, 상담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지킴이는 3주에 걸쳐 7회의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접수자격은 남녀전문 대 재학자 이상이며, 구비

서류는 이력서와 재학(졸업)증명서이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후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선발, 11월 11일부터 26일까지 7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주소 : (137-600)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 전화 : 576-7127~8

인터뷰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실행위원 이미경씨

고려해 극, 춤등의 형식을 빌린 시각적 효과를 적극 살릴 것이다.

▲NGO준비위원회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 5개 지역별 모임으로 나뉘었는데 각 지역마다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 상황은 어떤지요.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진 못하다. 과거엔 이데올로기와 대립에 따른 문제였다면 이제는 각국 여성간의 유대 속에서 환경·경제·종교등의 문제가 나서고 있다. 아·태지역의 경우 동아시아여성포럼은 정보를 교환하고 행동강령을 내오는 좋은 장이 되리라 본다.

▲북경여성대회의 배경과 목적은.
=75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제안으로 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76-85년까지를 유엔여성10년으로 제정했다. 75년, 80년 세계여성대회가 열렸고 85년 제3차대회에서는 3천72개국에 달하는 2천년을 향한 나아로비 여성발전전략을 제택, 2천년 까지의 여성정책 방향을 잡았다. 2천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점검하고 21세기 여성의 지위를 높이자는 요구에 의해 4차 세계여성대회는 마련되었다고 본다.

▲NGO 한국위원회의 결성과 활동은 어떤지요.
=지난 3월 31일 NGO한국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첫번째 사업이 지난 7월 열린 세미나와 10월 20-23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있게 될 동아시아여성포럼이다.

NGO한국위원회는 한국정부와 UN에 행동강령을 반영토록 하는 활동을 별일 것이다. 정부는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에 대한 이행 최종보고서를 지난 4월 제출한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NGO한국위원회의 몇몇이 참가해 검토했을 뿐 NGO위원회 차원의 참가가 없었다. UN에서도 정부측에 NGO 의견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NGO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보고서에 문제를 많다면 이후 국가보고서를 구해 반박보고서를 넣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NGO한국위원회 중에서 국가대표로 참석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NGO간의 유대강화를 통해 정보교류등의 통로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국내 54개 단체가 모이게 되었는데 NGO한국위원회 후속사업이 잡혀있는지.
=지금 잡힌 것으로는 동아시아 NGO위원회가 만들어 질 가능성성이 크다. 올 10월 일본대회를 시작으로 내년에 북경여성대회를 통해 중국에서 만나게 되고 96년엔 우리나라에서 있을 것이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유엔인권소위원회 안내부 진상조사단 내년초 남북한 방문

생존자면담, 민간단체와 보고대회 등 예정

유엔인권소위원회 일본 군대위안부 진상조사단이 내년초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 생존해 있는 남북한 군대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외무부의 유병우 아태국장은 이날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전시노예제도”에 대한 유엔차원의 일본 군대위안부 진상조사단이 내년 초 방한, 국내 생존피해자를 만나 증언을 듣고 관련

민간 단체와 보고대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국장은 “북한의 경우도 이미 유엔조사단의 방문을 작성,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2회 반핵아시아포럼 개최 10월 14~21일 원폭피해자와 일본 전후청산 등

올해로 2회를 맞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오는 14~21 일까지 일본·대만·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의 시민운동가 40여명이 참가하는 속에서 한국에서 열린다.

오픈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권위와 권리의 상징처럼 존재했던 사법부를 시민들이 국민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행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연대」(김중배, 오재석, 홍성우)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는 10월 27일 ‘살인혐의를 엎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법정을 개최한다.

‘열린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센타’는 첫번째 사례로 ‘김기웅 죄 사건’을 선정했다. 그 이유는 전범이 나와 무죄선고를 받기 까지 13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과 수사를 받는 동안 고문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법감시센타는 서너차례의 오픈 발표 이후 공무원, 재벌, 특권층에게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도 기획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최후 보루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위의식과 인권침해, 절차의 지연, 엄청난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혜진(사법감시센타 간사)씨는 “법원과 검찰이 권력행사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말하고 “유엔조사단은 남북한 동시조사활동을 마무리 지은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를 상대로 13일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내기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토론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는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연구소 강당에서 연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라는 주제 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자치시대의 의료’(강세운 전문의) ‘권리로서의 의료보장’(김용익서울대교수)의 주제발표가 있다. 참가비 5천원(교재포함) 문의 521-5364

성희룡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서울대 조교 성희룡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희룡 사건 항소심 재판부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나길동)는 13일 대구시 남구 대명6동 1021의 2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 전경사망 억울한 육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 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 등 긴급토론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안기부가 현직 교수 3명을 긴급구속한 사건에 대해 긴급토론회 등을 조직, 이를 여론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주제 아래 19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갖는 긴급토론회는 박세경변호사가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의 주제발표를 하고 김남석(경남대 신문방송학) 교수가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을, 강경선(방송대 법학) 교수가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을 발표한다. 토론에 앞서 정현백(성균관대 사학) 교수가 직접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귀가증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되었던 정교수는 32시간 조사를 받고 7일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당초 안기부는 “독일 유학중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친북조직에 참여한 용의점을 찾고 있다”고 긴급구속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안기부에서 풀려난 후 사실확인도 않고 보도부터 내보낸 무책임한 언론태도와 수사과정에서 내용을 흘려보낸 안기부의 태도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나아가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긴급토론회 주제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으로 긴급구속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 206조)에 의하면 긴급구속영장은 “3년형의 금고형을 받았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제도는 긴급구속영장 남발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 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긴급구속영장에 의한 연행과 구속은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8, 9월 달만해도 고대 프락치 혐의자 사망 사건, 이창복(전국연합 의장),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씨 구속 사건,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회 사건, 청소년 단체 ‘샘’ 사건, 성남지역 노동자회 사건, 부천 한누리 노동청년회 사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를 위한 하루찻집 16일, 불교인권위

‘불교인권위원회’(운영위

원장 진관)는 ‘조계사에서 62일간 농성한 철도 지하철 노동자 독립’ 하루찻집을 13일 산중다원에서 연다. 불교인권위측은 “이번 행사는 지난 7, 8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조계사에서 62일간 농성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니 할 한국불교의 앞날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에도 불교인권위원회는 당시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철도 지하철 노동자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일은행 128-20-303720
박용모(진관)

외대생 배병성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사건 항소심

“발로차 숨지게 한 물증없고 배씨 부인해 증거인정 못 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4일 김준도 순경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배병성(22,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에 대해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김준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죄등을 적용해 1심 형량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6월 12일 한충련 시위를 막던 서울 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김준경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배씨의 어머니는 배씨의 1심공판 진행중 검찰측 증인에 대해 폭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이날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11월 2일.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

사형폐지, 생명존중 운동 시작

사형폐지와 생명존중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을 불교인권위원회(운영위원장 진관)와 동국대속립동문회(사무총장 지원)가 함께 준비한다. 가칭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책임을 우리사회가 함께 지도록 한 취지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원장은 「생명경시풍조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저야할

14일 고난 운영위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은 14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상반기 사업보고를 듣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상·하반기로 나뉘어 1년에 2번 열리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고난의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11월 고난증창단 공연과 12월 달력사업 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첫 모임은 18일 오전 10시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있다.

문의 : 745-1852~4(불교 인권위)

외국인노동자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

고난은 오는 27일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와 공동으로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라는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를 연다. 27일 오후 7시 장소 감신대.

문의 : 393-4662

조정식 열사 12일 추모비 개막

89년 노동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조정식(서울대 물리학과 82)씨를 기념하는 추모비 개막식이 지난 12일 서울대에서 있었다. 「조정식 열사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는 「물리학과 학생들이 그의 삶을 이어받고자 추모비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학생, 유가족 회원을 비롯하여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약력 : 82년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 84년 제적, 84년 10월 노동현장 투신을 결심하고 인천 전도(주) 취직, 86년 「반체동맹사건」으로 구속 3년 선고 1년 9개월동안 수감, 88년 광복절 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호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 한다' 등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남녀 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호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 한다」 등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여성문제 요약한 여성수첩 95년판 발행

95년 여성수첩이 25일 발간된다. 여성수첩에는 기존수첩의 형식에 성폭력 문제와 가사노동문제, 사무직여성노동, 환경 및 통일 문제등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비디오·도서목록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실렸다.

여성의 전화는 여성수첩 단체구매주문을 받고 있다. 단체주문시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수첩표지에 단체명 인쇄가 가능하며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여성의 전화)는 86년부터 일반여성들에게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여성문제 개론서의 성격을 담은 여성수첩을 발간해 왔다.

보통수첩과 장수첩 두 형태가 있고 색깔은 자주색·남색·녹색 3가지이다. 가격은 3천원. 문의 : 269-2962

전국여성대회 열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는 14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제31회 전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 50%를 목표로 하되 우선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석 20% 확보를 위해 모든 여성이 힘을 합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남녀 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호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 한다」 등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긴급구속

경찰, 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는 전혀 따지는 일이 없으니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을 길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긴급구속의 요건은 ▲구속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긴급구속만 하면 ‘합법’

이런 ‘까다로운’ 긴급구속은, 구속영장 없이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판행이 인권침해라는 비난과 법원

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뒤 사문화되다시피한 「긴급구속영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김영삼정부 출범 뒤 긴급구속된 사람은 1만3천7백32명으로 검사가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사람이 5백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4백30명에 이르는 등 전체 8%에 달하는 9백76명에 대해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은 긴급구속영장제도의 남발이라는 문제점을 증명해 주는 예이다. 심지어 긴급구속영장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며 긴급구속시 구타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합법이라는 형식 갖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긴급한 경우에만 발부하는 것

긴급구속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의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만큼 긴급구속장의 침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구속 요건지키기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은 긴급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로 한 만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보기로 안기부가 지난 5일 연행, 긴급구속한 정현백(40,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등의 예를 들었다. 정교수등에 대한 마구잡이 연행이라는 비난에 대비해 「긴급구속」이라는 방어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찰, 지휘권방기 의혹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미리 알고 내부의 규칙을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아니면 자신들이 편법으로 이용할 것에 대해 비해 ‘우리도 이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소’하고 전시용으로 내놓을려고 마련한 규칙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검찰, 지휘권방기 의혹

긴급구속영장제도가 일반화된 데에 대해 검찰측이 지휘권을 일정정도 방기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긴급구속의 집행절차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긴급구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긴급구속 즉시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승인을 요식절차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불법적인하는 법원, 재판체계 정식영장 발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긴급구속의 남발과 오용을 정식영장의 실사과정에서 철저히 가려야 할 법원이 이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긴급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씨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때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명백한 법 위반은 간단히 무시되었다. 이씨등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긴급구속은 긴급구속요건이 충분하지 않

(☞ 2면에 계속)

담요 씌운채 구타하며 강제연행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

15일 8시경 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제사회주의자(IS)」 구속자 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해숙(학원강사, 26), 양효식(대학강사, 38)씨를 연행, 긴급구속하였다. 또한 최일봉(38, 전 외대강사)씨를 포함한 19명을 긴급구속영장으로 연행하거나 영장없이 강제연행하였다.

가족들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제시를 안한 것은 물론이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구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 수사 도중 구타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연행자된 정원현(27, 외대중퇴)씨는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8명 정도의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담요를 뒤집어 씌운채 구타를 하면서 연행하였다.

(☞ 1면에서 계속)

고, 설사 그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48시간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 207조를 판사에게 상기시킨바 있다.

'인신구금 법원권한', 법원이 찾아야

'공안사건'에 있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긴급구속제도를 합법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유선호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요건을 엄격히 심리해 위배가 될 경우에는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긴급구속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인신구속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집행자의 인권의식이 가장 중요

긴급구속영장제도의 규정을 완화한 긴급체포장제 도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얘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검사가 발부한 체포장으로 구속한 뒤 48시간 안에 사후영장을 받는 제도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긴급구속 요건충족에 나서는 문제점을 일정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보장이라는 기본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피의자들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왜냐하면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제사회주의자 구속자 후원회」 회원들을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았다면서도 영장을 보여주기는 커녕 '수갑을 채우고 담요를 뒤집어 씌운채 구타를 하면서 연행'한 사례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동철(25)씨 등 회원 10명을 연행, 긴급구속하였다. 연행자 명단

서울지역(10명) : 최일봉(38, 전 외대강사), 남수경(26, 고대졸), 이혜숙(26세 학원강사), 정원현(27, 외대중퇴), 국경화(25, 동덕여대졸), 안우준(21, 단국대재학), 한규한(22, 시립대재학), 한은솔(21, 시립대재학), 박순봉(30, 출판사대표), 이택규(26, 외대중퇴) 영남지역(10명) : 김동철(25, 외대중퇴), 한은희(25,

동아대졸), 서수진(24 국제신문사), 정도근(31, 봉생병원), 정은경(25, 대우정밀), 임유현(30, 노동자), 박정주(25, 학원강사), 정동섭(32, 현대자동차), 2명은 신원파악 못 함.

풀려난 사람 : 김성학(20, 시립대재학), 임미정(25, 시립대재학), 정종남(25, 대학중퇴), 양효식(38, 대학강사), 송재순(22, 고대재학), 김은주(24, 대학원재학), 4명은 신원파악 못 함.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청소년 단체 「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발표한 편의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한 동아일보사(발행인 김병관)를 「샘」 회원이 언론중재위에 지난 10일 중재를 신청하였다. '고교에 주사파 침투'란 제목의 9월 9일자 기사는 동아일보 사회면으로 샘의 활동을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운동 조직"으로 표현하고 "1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주체사상이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고교생에게 가르쳐왔으며,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을 강연"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강천규(청소년단체 샘회원, 20)씨는 중재신청이 유서를 통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실과 다른 샘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영국(샘 회장, 구속)의 2명은 실제 고교생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사실이

없으며 주체사상을 가르칠 목적으로 샘을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족문화에 대해 배우며,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샘은 고등학생들에게 공개된 단체"라고 말하였다. 또한 "보도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샘을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해 고영국씨에게는 '우리는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들의 내용을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배끼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문제가 된 동아일보 9월 9일자 보도로 인한 피해사실로 "샘에 출입하던 학생들은 자진학동의 정계를 받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의 일방적인 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 단체 「샘」에 대해 주체사상을 교육한 이적단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 공판안내 ◆

□ 10월 18일(화)

- 김용우(청소년단체 「샘」 사건), 국보법, 2시, 317호, 1회, 1단독
- 김재용, 국보법, 11시, 318호, 2회, 합의25부
- 안영민, 국보법, 2시, 318호, 2회, 합의25부
- 박래균(국구전위사건), 국보법, 3시, 318호, 2회, 합의25부
- 이종욱, 국보법, 3시30분, 318호, 1회, 합의25부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와 교사들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순주씨는 "징계시 학칙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명백한 학칙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감초들의 이야기"에는 동일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실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기적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자율학습 금액을 더무니 없게 많이 징수한 내용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동일여고의 이 같은 징계는 지난 9월 영동포여성이 청소년단체 「샘」 행사에 참가한 것을 문제삼아 학생 2명에게 자진학동형식을 빌은 사실상의 퇴학처를 내린데 이어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학칙으로 가로막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91년도에 비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조에는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13조에는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 바로 잡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6호(10월 18일자) 1면 머리의 '긴급구속' 기사에서 '긴급구속영장'을 '긴급구속장'으로 정정합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에는 긴급구속장으로, '사법경찰관리 규칙'에는 긴급구속영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그간 용어상 혼란이 빚어 왔으나 '사법경찰관리 규칙'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긴급구속장으로 통일해 사용하겠습니다.

가평교육청 90년『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경기도교육청이 복식수업의 비교통폐합을 반대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문제와 함께 농촌 생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분교통폐합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벽지 교육투자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농현상과 도시집중의 과밀화 현상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복식수업에 대해 비효율성을 들어 폐교명분을 찾은데 비해 김씨는 "학력향상을 이유로 분교 통폐합이 문제된다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정서적 불안, 학부모들의 위ها감·비협조는 학력향상에 더 큰 어려움으로 나설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분교이동의 학력향상은 연구기관이나 연구학교의 연구에 따른 학습방법, 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소규모 학교 지원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점에 대해 조용환(숙대 교육학)교수도 "최근 열린 교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소규모 학교와 복식학급 운영방안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와 교육적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폐합 반대이유로 도서벽지의 문화적 낙

긴급토론회 :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

- 일시 : 10월 19일(수) 오후5시
- 장소 : 서초동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전화 : 522-9814)
- 차례 : 경위보고 -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박세경)
·제작된 언론보도와 인권(김남식)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강경선)
- 주최 : 기독자교수협/민교협/참여연대/학단협/한교협
권위/여연

두밀학교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인형극, 슬라이드, 노래등 다채로운

'두밀학교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이 20일 오후 7시 30분 장충동 경동교회에서는 두밀학교살리기에 뜻을 같이하는 예술인들과 함께 펼쳐진다.

'두밀학교 학무모회'와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이 마련한 공연은 슬라이드 '두밀리의 하루', '두밀리 어린 친구들에게 뛰우는 김광석 아저씨의 노래', '인형극과 노래'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날 초대손님으로는 노래패 「노래마을」, 민중가수 윤선애씨, 뮤지컬 배우 나윤선씨, 연극인 이두성씨들이 출연한다.

'두밀학교살리기 연대모임'은 "작은 학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집 제작과 농촌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마당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입장료 1만원. 문의 : 766-7327(조혜영)

후성을 들면서 벽지학교는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예산 투자의 비경제성을 들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나아가 국가는 지역간 고른 발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인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미풍양속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서벽지 전통이 있는 물질적 풍요속에 정신적 빈곤의 사회병폐가 커지리라는 인식에서부터 분교통폐합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유초등교수, 안기부 에 자진출두

사민청 정치학교장 활동과 관련해 안기부 수배를 받아온 유초하(46,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18일 오후 안기부에 자진출두했다.

유 교수는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기부의 수배를 넘도록 할 수 없다. 하지만 안기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혐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출두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교협 9개 단체로 구성된 「유초하 교수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유 교수의 자진출두와 관련한 생명을 통해 수배 및 직위해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 공판안내 ◆

□ 10월 19일(수)

- 안재구(구국전위사건), 국보법, 4:30, 311호, 3회, 합의21부
- 정화려(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40, 2회, 311호, 합의21부
- 안병일(김정동 사건), 국보법, 2시, 속행, 421호, 8단독
- 신광수와 1, 국보법, 5시, 424호, 속행, 9단독
- 이영기등 3(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시, 425호, 합의22부

□ 10월 20일(목)

- 김진국, 국보법, 3시, 311호, 1회, 합의21부
- 김병목, 국보법, 3시, 317호, 속행, 3단독
- 김기현, 국보법, 10시, 321호, 선고, 5단독

□ 10월 21일(금)

- 김영광, 국보법, 10시30분, 321호, 선고, 6단독
- 이봉근, 국보법, 10시, 311호, 1회, 합의23부
- 심충석,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23부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긴급구속 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사후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구속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 막을 특별규정 필요

또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후 암수 수색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찾아내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범죄 사실이 설사 구속사유가 되더라도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을 긴급구속이란 이름하에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48시간 정도 법원의 통제없이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긴급구속시 영장청구기간을 헌법의 48시간 또는 72시간에서 24시간 혹은 48시간으로 줄이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련 회원, 기무부대에 연행
민정련 구로지부 회원 임영기(23, 육군 56사단)씨가 18일 오전 육군 제602 기무부대에 연행되었다. 임씨는 현재 수도사단 현병단에 수감되어 있으며 현재 연행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씨는 방위소집 해제일을 10여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다.

긴급구속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장으로 인신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동 6개단체가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서 진행한 '긴급토론회'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세경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하고,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대성,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로 침해된 권리, 보장받을 길이 없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과 경찰이 긴급구속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구속을 남발하여 있다"며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침해된 인권은 보장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후영장 청구시 긴급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국전위」 안재구씨 반국가단체구성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61)씨 2차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반국가단체의 구성, 금품 수수' 등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씨는 "피고인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해 일본에 있는 주체사상 연구 조직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만들려고 여러 사람을 만나던 과정이었고 조직을 결성하기 전 구속된 것이나"는 김제완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등'(제3조) 공소사를 부인했다. 또한 '자진지원 금품수수'(국보법 5조) 부분에 있어 93년 3월 정화려씨를 통해 3백 엔과 서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신내용은 건강에 유의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내용과 광명본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지 핵심인사를 배치, 배후조종등의 내용은 없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회합통신'(국보법 8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서 '구국전위결성 축하문'을 연락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형법 98조 '간첩죄' 부분에 대해 전주교도

소 복역당시 임장하씨와 복역한 것은 사실이나 서로 다른 방에 있어서 대화

조선일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다"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27·서울 영동 포구 문래동)씨 등 15명은 19일 여성지 <필>을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와 이 잡지의 신상근(31)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취재원의 수기 형식으로 잡지등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하거나 추상화시켜 일반인이 가사전체의 흐름을 통해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간 <필>은 지난 8월호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기사에서 86학번 여학생 가운데 기사내용과 일치하는 인물이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8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이 기사로 인하여 전주를 모교로 한 여학생을 물론이고 서울대 사회대 86번인 원고들은 대부분 미혼의 신분으로 주위로부터 사실확인을 요구받는 등 더무니없는 억측에 시달리고 있다"

조차 나눈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교도소 내에서 조선노동당 입당을 한 것처럼 한 안기부 조사당시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로 이뤄지며, 26일 오후2시30분.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등(40·사학과) 3명을 단지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구속하고 밤샘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행위"이고, "안기부는 구체적인 범죄事實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언론에 연행사실을 흘려, 연행된 교수들이 '북한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게 하여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안기부의 이런 처사는 박홍충장의 발언, 유초하 교수 지명수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양심적, 비판적 지식인들을 사회의 발전노정에서 배제하려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안기부는 정교수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흐리지 말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할 것,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긴급구속제를 보완할 것, △박홍충장의 주사파 발언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그를 사법조치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 밝히고, "이 사건의 판결결과를 <필>지에 게재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등 6개단체 성명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여연동 6개단체는 19일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안기부가 지난 5일

◆ 행사안내 ◆

□ 두밀학교 살리기 기금 마련 한마당

-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 7시
- 장소 : 경동교회(장충동)
- 내용 : 두밀리의 하루(슬라이드)/두밀리 어린 친구들에 게 떠우는 김광석 아저씨의 노래/인형극과 노래등
- 출연 : 노래마을(노래패)/윤선애(민중가수)/나윤선(뮤지컬 배우)/이두성(연극인)등
- 주최 : 두밀학교 학부모회/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 문의 : 766-7327(조혜영)

□ '94 장애인 가정을 위한 평화교육 강좌

- 일시 : 10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천주교 종로성당(전화 765-6105)
- 내용 : 강연1, '인권과 인권교육'(서준식)/강연2, '장애인, 가정, 평화교육'(김성재)/전체토론
- 주최 :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전화 823-3961)

□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발족기념식 및 토론회

- 일시 : 10월 21일(금) 오후 6시30분
-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내 대동강회의실(전화 820-0802)
- 토론회주제 : 우리 시대의 진보란 무엇인가
- 토론회차례 : 주발제(김진균)//보조발제(양재혁, 최감수, 문성현, 김칠준)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사망한 이씨가 수용되어 있던 정벌방의 넓이는 약 0.78평(쪽 1.2미터, 길이 2미터)정도로, 바닥은 목재로 되어 있고, 창문(가로 62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은 지면으로부터 약 2.5미터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벌수용자의 독거실 수용실태를 보면 수용기간은 1개월정도이고 식사 또는 대소변 시에도 포승과 수갑을 채운다고 한다. 이씨의 수용 당시 독거실내 기온은 매우 무더웠는데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19일 온도는 최고 34.2도, 최저 26.2도였고 사망일인 20일은 최고 34.3도, 최저 25.3도였다. 무더위 속에서 독거실에는 별도의 냉방장치나 통풍장치는 없고 단지 방충망이 달린 유리창문을 통해 환기가 가능할 뿐이었다. 수용자에 대한 음료수등 공급은 1일 3회 식수와 세면물을 공급할 뿐이라고 한다<본지 219호 참조>.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종)는 지난 7월 영등포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정벌방에 분리수용되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며 행형법 개정을 통한 교도소내 가혹한 정벌제도와 열악한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숨진 이씨는 협소한 시설에서 상당한 이유도 없이 포승결박과 수갑을 채워 감금당하고 그 상태에서 식사와 생리현상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변협은 "이러한 조치가 정

상인들 조차 견디기 어려웠던 지난 여름의 이상고온현상아래 취해졌던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훈령 지침서등 공개되어야

또한 정벌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온몸이 결박당한 채 정벌방에 분리수용되었고 수용된지 하루만인 20일 밤 11시30분경 순찰중인 교도관에 의해 목맨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숨진 이씨는 협소한 시설에서 상당한 이유도 없이 포승결박과 수갑을 채워 감금당하고 그 상태에서 식사와 생리현상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이의 즉각적인 공개와 인권침해 요소 시정을 요구했다.

동일여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내 2명 퇴학당해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에 학교비리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퇴학을 내린 동일여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송경진(19, 3학년) 학생이 퇴학당한 김순주 학생에게도 학교측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학조치 했다. 학교측은 무기정학 및 퇴학조치를 문서로 공개하지 않고 해당

학생에게만 일방적으로 전했다.

김씨는 "무기정학을 당하고 나서도 학교에 나가 청소와 반성문을 써야 했다. 그러나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지 않았다"며 퇴학경위를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계속적인 등교투쟁과 항의방문, 전화결기등을 통해 부당한 퇴학조치에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의전화 교장실 802-0994 교무실 803-9806/802-0995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박세경 변호사

편집자주: 19일에 열린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을 발표한 박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다면?

- 현행법상 인신구속은 사전 구속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경우와 긴급구속의 경우 2가지가 있다. 긴급구속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인 위 긴급구속제도는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 자체만으로는 인권을 유린한다고 말할 수 없으나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하고 그 적용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이를 남용함으로써 국민(증거는 피의자)의 권리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은?

-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위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시간의 긴급성, 구속의 사유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만일 이중 어느 하나를 결한다면 불법구속이 된다.

* 현재의 긴급구속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 렇지 않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 그동안 소위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왔기 때문에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임의동행'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법부로부터 불법이라는 판단을 잇달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긴급구속'제도를 활

행위인 것이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을 당한다면 피의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회복할 수 있을까요?

- 법논리적으로만 말하다면 요건이 흠결된 채로 긴급구속한 수사기관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겨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구제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의 인권의식, 특히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법원의 높은 인권의식이 필요하다.

* 긴급구속의 남용,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 (1)현재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의문으로 아예 특별법을 정하거나 혹은 긴급구속 조항 자체에 특별 조항을 넣어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배하여 긴급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통으로써 수사기관을 간접강제하는 방법과 (2)수사기관의 긴급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여 긴급구속시 영장발부 기간을 현행의 48시간 내지 7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단축하고 사후영장 발부시 법관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하는 방안, 즉 필요적 영장실질검사에의 도입등이 있겠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체포장제도와 긴급구속을 비교한다면?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의 긴급구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새로 체포장제도만을 도입하였다. 즉 제200조의 2를 신설하여 체포장 제도를 두었고, 제201조의 2에서 "체포,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청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의자를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여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개정안 체포영장제도의 실시를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체포전치주의의 불체택), 또 체포장의 발부요건도 구속영장의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어 도리어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았고, 영장실질심사제 역시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그 실효성이 의문이 같다. 요컨대 국민의 인권보장에 그 촉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의 편의에 촉점이 맞쳐져 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유가협 국회 의사당 앞 시위 청원 제출 예정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회장 박경기, 유가협)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가협 회원 10여명은 20일 오전 8시40분부터 9시40분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회내 의문사진상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

문사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원들의 출근시간을 이용해 진행될 홍보작업은 다음주 24-28일까지 계속되며, 28일에는 위의 내용으로 국회청원을 할 예정이다. 그뒤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의문사문제 해결촉구 작업을 벌이게 된다.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서울평화교육센터」(이사장 김삼룡)에서는 '장애인·가정·평화'란 주제의 제2회 평화교육강좌가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종교인·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는 서준식(인권운동 사랑방)씨가 '인권과 인권교육'을,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교수가 '장애인, 가정, 평화교육'을 발표하였다.

서씨는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은 30여년의 군사독재와 고질적인 대입제도로 발달한 틈이 없었다. 91년 정부는 어린이 권리조약에 대입했지만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배우

는 인권교육은 다른 삶의 권리로 또한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인간의 삶을 사랑하는 인성교육과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실천교육이 번증법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교육의 도덕·윤리교과를 인권과목으로 바꾸는 대입적인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23면에 발표문 발췌).

김교수는 평화교육이란 "평화적 체제를 구현하고 평화적 인간성의 실현이 동시에 윤리적으로 완성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장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장애

아에게 동등한 권리 구현"해야 함을 역설했으며 평화교육은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평화교육센터」는 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제3차 총회에서 아시아의 종교인들이 모여 인류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교육단체이다.

AI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 방문 실태 조사

지난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조정이다.

◆ 알림◆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 일시 : 10월 23-27일
-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국제인권봉사회(IS)
- 일정 :
 - 23일(광주 ☎ 062-232-5809)-강의 : 국제사회에서 불처벌 'Impunity'에 관한 논의 진행과정과 국제법 기준 고찰/토론: 광주문제를 주제로 한 대 유엔활동 등
 - 24-25일 정동성가수녀원(서울 ☎ 735-7832)-강의 : 민간단체의 국제제도의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토론: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 유엔을 활동을 할 것인가 등
 - 26일(부산 ☎ 051-817-6460)-강의 : 유엔인권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다른 국제인권제도 소개/한국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 유엔 활동을 펼 것인가 등

□ 민중연대와 통일을 위한 한마당 '아리랑'

- 일시: 10월 22-23일 오후 5시30분
- 장소: 경희대 노천극장
-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747-4364/5)
- 출연진: 정태춘·박은옥·노래마을·소리물결·조국과 청춘·어린이 노래단등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발표자 : 서준식(인권운동 사랑방)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과 인권운동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만 신창이인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은 확실히 인권교육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인권의식은 결코 배우지 않는 직감이나 양식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간혹 양식있고 지성적인 '민주인사'나 종교인의 무의식 속에까지도 병균처럼 뿌리깊게 박힌 차별감정과 반인권사상을 감지하곤 한다. '인권교육'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말이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인류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다.

인권의 존재를 좌우하는 기본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다. 대체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나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지배되고 있으며 각 국민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특권자들을 위한 강제적 통치

기구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커다란 힘이 항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인간의 권리'라는 주장 혹은 인권의 이념이라는 것은 근본에 있어서 '진보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권리'를 배운다는 것, '인간의 권리'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완성판인 하나의 진보이념을 통째로 배워 삼키는 일과는 다르다. 그것은 누구나가 동의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원칙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을 통하여 인권의 구현을 방해하는 이 세계의 억압구조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그 억압구조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럴싸한 레톨릭(궤변)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비판의식을 들통히 키워나가는 일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지배질서에 대해서도, 각 국민국가 내의 강제적 통치에 대해서도 진정하고도 근본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독재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일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인권교육을 애써 '체제내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교육이면서 인권운동의 일부분이다. 그것은 인류의 인권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인권운동의 핵심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짚어져 나갈 많은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일 때 국제적 규모의 인권운동은 점차 더욱 분명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은 그 본질에 있어서 변증법적 교육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참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를 고쳐나가는데 참여할 스스로의 잠재력을 의식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아울러 도덕적 헌신을 갖춘 인권옹호의 투사가 자라날 것이다.

인권교육은 항상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되는 거대한 인권운동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어른에게는 물론 어린이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일차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것이며 학교에서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 이것이 '인권'의 정의다. 어린이(만18세 미만·'어린이의 권리조약' 1조)도 '사람'인 이상 인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노릇이지만 이 당연한 노릇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생소하기만 하다.

유구한 봉건시대, 일본제국주의의 통치 그리고 50년에 이르는 독재의 시대를 겪어온 우리의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건방지지 말 것'을, 자유가 방종에 흐르기 쉬움을, '악법도 법'임을 가르쳐왔고 '권리'라는 개념은 없이 의무만을 강요해 왔다. 많은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의 의식 속에서 '교육'은 어린이에 대한 '자비로운 관리'이다. 어린이를 교육과 인권의 주체로 인식할 수 없는 이런 풍토에서

'인권교육'이라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것으로서 차가운 눈총을 받게 마련이다.

어린이의 권리옹호론은 종전에 때로 무권리자인 어린이에게 얼마만큼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원칙과 예외가 물구나무 서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어린이는 '사람'이다. '사람'인 이상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어른과 똑같다. 인권에 있어서 어른과 평등한 어린이는 '나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그 인권에 불가피한 한도의 구체적 제한을 받을 뿐인 것이다. 어린이가 인권의 주체라는 이런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 뻔하다.

누구나 국가나 강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보장받는 인권항목을 우선 알아야 하고 인권을 회복하려는 높은 인권의식이 있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같은 이치로 어린이는 스스로의 인권을 국가나 어른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공부와 연습과 놀이를 통하여 인권의식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의 단계에서 인권으로 배운다는 것은 어린이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자신 주위의 인권침해 현상에 대하여 분노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 어린이는 성장하여 험한 사회로 진출할 때 스스로 인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어린이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세계를, 인권의 구현을 가로막는 힘의 정체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가를 깨치고 사회의 권리구조에 관한 비판의식을 터득해갈 것이다.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의견 표명의 자유'(조약 12조)가 있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조약 14조)가 있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조약 15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조약 16조)가 있고 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조약 27조), '여가, 놀이 및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조약 31조) 등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부모의 이혼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모를 따라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하는 현실에, 자기 친구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현실에, 방과 후에는 빈틈없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 현실에 피로와 할 것이다. 어린이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권리의 주체이어야 할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들 내부에 주체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왜 인권이 구현되기 어려운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인권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통찰력과 그것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참된 이상을 선물할 것이다. 사회적 전망과 따라서 사회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는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여러 단계에 걸맞는 방법과 강도로 '세계인권선언'과 '어린이의 권리조약'을 체계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실습을 통해 되풀이 배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아에 맞는 여러가지 다양한 교재(장난감, 그림책, 비디오테이프, 만화, 놀이, 교과서 등)가 개발되어야 한다.

유아기·국민학교 저학년에는 자기를 인권의 주체로서 자리를 매기는 감성과 반차별의 이미지를 키우는 교육에 중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궁지(자기긍정의 논리)는 인권의 주체로서 자라는 데 불가결한 조건이며 유(類)의 감성은 주위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느끼고 존중하게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또한 직업, 신분, 피부색, 언어, 신체조건, 성 등에 있어서 평등을 납

고등학생에게는 이에 더하여 인권

'윤리·도덕'의 이름 아래 반인권적 이데올로기로 가득 채워진 과목을 '인권'이라는 과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거대한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인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인간권리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교육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은 매우 훌륭한 윤리·도덕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 역사, 여러가지 인권보장제도의 메카니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마지막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억압,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천적 지식(가령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등)이 필요하다. 인권이 구현되지 않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은 고등학생에게 필수라 하겠다.

이 모든 교육이 실제로 해보는 산 교육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는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지각할 수도 없다. 실습의 장은 가정이나 학교를 넘은 넓은 세상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도덕' 과목을 '인권' 과목으로!

이제 우리는 정부에서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인권교육을 우리 손으로 하나씩 시작하자. 중·고등학생들에게 서어를에서, 야학에서, 주변에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과감하게 정부에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에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에는 '윤리'라는 과목이 있다. 나는 '윤리·도덕'의 이름 아래 반인권적 이데올로기로 가득 채워진 이들 과목을 '인권'이라는 과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거대한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인권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인간권리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용한 교육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은 매우 훌륭한 윤리·도덕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은 '교육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교육은 어린이에게 예언자의 예지와 성녀의 사랑의 정신과 반체제 지식인의 비판정신을 선물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 그것은 우리에게 밝은 21세기를 약속해 줄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전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공안정국 탄압종식, 구속자 석방등 촉구

학계, 종교계, 법조계, 사회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 1천여명은 24일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신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친물을 끼얹고 UR국회비 준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올 지방자치 선거에 대비해 민주세력을 억압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직시한다"며 현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개혁의 내용으로 "진정한 민주개혁과 민족대단결정책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또 구체적으

로 "최근 벌어지는 탄압 행위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모든 구속자를 석방할 것, 통일을 가로막고 공안탄압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민족대결정책을 중지하고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시급히 개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경실련 불교시민연합 등 12개 노동, 인권, 종교단체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연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1년을 기한으로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이들의 통상임금은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 이하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도 제외된다.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작업 시작

을 12월중 유엔 각국 외무장관들에게 보낼 예정

「한국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0-23일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아시아포럼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함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서명활동을 벌이게 된다.

정대협은 "일본이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 여성들에게 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여대협, 여성단체, 교회를 중심으로 지방에서부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대협은 서명을 12월 안에 각 UN 가입국 외무성과 UN 본부에 보낼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지자 합법적인 외국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금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지난 4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 폐교철회소송을 한 두밀분교 폐교문제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피고 가평군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폐교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재판을 자연시키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두밀 폐교문제가 교육적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자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해 재판을 끌어불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10시 민사20부 제1특별부(주심 김기동판사)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의회 조례만으로는 폐교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을 집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피고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측은 두밀분교폐교가 주민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조용환(수대 교육학과)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함께 가평군 교육청이 폐교의 부당성에 대해 밝힌 『가평교육』(90년 가평군 교육청 발행)을 증거물로 제시했다(<인권하루소식> 267호 참조). 다음 공판 :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3호.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서명

원진레이온 비대위, 전노협, 전노운협, 민변, 환경운동연합등 21개단체로 구성된 원진레리온 살인기계 중국이 전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신촌로타리와 명동성당 앞에서 산재종합병원설립과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취업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번 서명운동에서는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원진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기회 보장,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보장 그리고 이를 보장할 노동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원진비상대책위 4자리 합의각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우명규 서울시장(당시 부시장)은 당정협의회에 참가, 폐업으로 일터를 잃은 6백여명의 원진노동자들을 제2기 지하철공사에 재취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조직적 토대위에 구체적이고 대표적이며 장기적인 인권침해가 있는 사건을 선택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활동해야 한다

비활동을 전개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감시하며 국제인권단체와 정보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고문, 장기수, 국가보안법, 의문사 등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유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드레앙과 레이첼씨가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토론했다. 그뒤 유엔문서 작성과 국제인권단체소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대훈씨가 '민간단체의 국제연대 사업방향과 실천적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각 주제별 유엔인권제도 활용방안(편의상 문답형식으로 작성함)

<고문>

- 고문방지협약으로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제소가 가능한가?
우선 한국이 가입하도록 압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제권 인정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제소는 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에 의해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 이후 발생한 고문은 B규약 7조 '고문·인체실험의 금지'에 위배, 제소할 수 있다. 또한 96년 한국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박보고서를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비록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한 국정부는 다른 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용해서 개별제소는 불가능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 등을 적극히 배분해 매년 줄기차게 고문피해 사실을 제소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인권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생겨났다.

- 안기부등의 강압수사는 고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가?
고문에는 육체적 고문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 대우가 포함된다.

다. 한국정부대표는 93년 비엔나인권 대회 협의과정에 참여하여 고문방지 협약에 명시된 광의의 고문개념을 인정했다. 스스로 인권이사회 회원국신청을 했고 지난 1년간 UN참여과정에서도 고문방지위원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미 한국정부가 광의의 고문개념을 인정했다.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긴급호소', 고문특별보고관 방문, 근거있는 사안에 대한 집중'으로 나눌 수 있다. 고문특별보고관 니겔 로드리(Nigel Rodley)씨 앞으로 호소하는 긴급호소방법이 있다. 이때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문특별보고관은 현지를 방문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문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고문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방문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많은 제소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은 로드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인권문제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소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시 권한은?
UN에는 보고관방문과 관련되어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다. 유엔사무총국과 해당정부의 상의아래 방문이 결정된다. 보고관은 고문과 감옥안의 처우에 주요관심을 두고 있다. 단순히 고문희생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가, 감옥안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문특별보고관 방문에 앞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정부가 잡아둔 일정에 대해 보고관이 가고 싶은 곳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숨기고 싶은 것을 제대로 숨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장기수의 문제로 긴급호소가 가능한가

고문방지협약으로는 감옥안의 처우에 대해 제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B규약 10조 '수감자 처우'로 감옥안의 처우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다.

또하나 제소를 할 경우에는 확실한 사건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수문제로도 제소가 가능하지만 한국정부가 그일은 과거의 일로 문민정부하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보고관으로서는 크게 문제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해석에 따른다.

다른 나라의 비상사태 관련 법제와 연결시키는 국제적인 국보법캠페인을 생각할 수 있다

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 연구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자의적 구금, 장기수>

구금종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현재 사건임을 말한다. 자의적 구금은 현재에도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다. 설혹 구금당시 위법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구금은 자의적이며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때 B규약 9조 '신체의 자유'에 의해 제소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가 첫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장기적 구금이 B규약에 위배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B규약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배된다는 권고안을 낸 사실이 있다. 한국 인권단체는 선택의정서에 의해 강력한 제소가 가능하며 특히 96년 한국정부보고서에 지난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짚어가면서 반박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5명으로 구성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정치적 권리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준 사법적 효과를 갖고 있다. 실무그룹은 인권위원회 제소전에 모임을 갖는데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는 8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법적 절차를 받은 경우 자의적 구금이라 말하기 어려우며 제소가 어렵다. 그러나 절대적 예외가 있는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장기수의 경우 18세 이하에서 구금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UN결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하겠는가?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일단 언론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넣는 방법이 있다. 둘째 UN의 결정을 갖고 외무부를 통해 질의서를 보내는 방법 등 직접 정부와 부딪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 한국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나라 대사관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길이 있다. 이 방법들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다.

<군대 내 사망 등 의문사문제>
의문사가 자살이라하더라도 그렇게 수많은 자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UN 인권이사회는 B규약 18조에 따라 국민이 군복무를 암시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린 바 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다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기준판례를 재확인하여 원심에서 국가기밀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황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재야인사의 신원정보 제공 및 비전문가인 황씨의 혁관련 발언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소 주변이 심해 가정을 돌보지 않아 파탄에 이른점과 피고인을 폭행, 코뼈가 부러진 사실 등 정상을 침작할 때 원심 형량은 다소 과중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15일 밤 11시께 늦은 귀가를 나무라는 아버지(51)와 실랑이를 벌이다 흥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양애리(22)씨에 대한 존속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칼을 숨기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이나 피고인의 법원과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의 상황, 상처의 깊이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뜻을 인정할 수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씨의 공소사실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셈이됐다. 김씨 남매는 93년 9월 일본

에서 한통련등과 접촉했다는 이유등으로 기소됐었다. 원심재판부는 김은주씨에 대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부문에 대한 판결에서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하여 구입한 한겨례신문과 말지는 목적수행을 위한 의도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밀 탐지·수집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같은 재판부는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혐의는 군사관련이나 혁관련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승중에 있습니다.

국제인권제도·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 (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실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한국인권상황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무대에 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우리의 언어장벽과 소극적, 수동적 생각등이 작용한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한 나라, 민주화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종이나 불법처형등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도가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 국제적 관심의 우선순위를 뺏어나고 있다. 그리고 UN등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연대에 부작용으로 미쳤다.

2. 우리의 귀중한 성과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단체공대위의 경험과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인권상황조사 때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의 안내활동,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등을 얻어낸 노동조합의 국제연대활동,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등 여성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등이 우리의 국제연대 성과로 남아있다. 이제 국제연대에 관한 정보교환과 논의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자료축적의 진전과 국제연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 인권운동의 국제연대활동이 취해야 할 기본원칙, 과제

국제연대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로비를 벌이는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한 외국 인권단체와의 관계를 돋우히 하는 속에서 이 관계의 확대를 통한 다자간 관계의 추진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인권문제는 표면적 민주화와 경제화의 장벽에 막혀 있다. 한국의 인권문제가 우리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보편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문제를 ‘불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체제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가는 전국적 협력체계의 네트워크가 제기된다. ‘인권, 국제연대, 운동’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의 개념 확장과 국제정세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야 한다. 또한 운동은 현장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연대는 주고받음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활동도 필요하며 평화, 여성, 개발, 민주주의, 참여 등 인권과 다른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교류와 집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조직에서 인권문제는 정부간 관계라기보다는 민간단체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4. 해야 할 일

<국내>

국내인권운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몇 개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나 설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분야의 기본 인권기준의 설정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정, 사법차원의 인권관련 사항 감시와 평가 그리고 여론화가 있어야 한다. 인권단체와 대중단체의 결합력을 보면 대중적 힘에 의거한 단체가 적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바탕으로 한 속에서 ‘권리’라는 이름아래에 연대가 가능하다.

<국제>

정보제공과 통보(Communication)의 확대, 지속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

히 관심주체의 전문가(UN 특별보고관)와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국제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제출 및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4년간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언론보도 확보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등을 통한 정부의 국제활동을 감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UN 인권위원회 및 연대회의에 정기 참가와 모니터활동 및 보도, 정기적 분석이 되어야 한다.

5. 장기적 계획아래 해야 할 일

국내인권단체간 전략협의모임이 상설화되어야 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또한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전문법조인이 늘어나야 한다. 국제인권활동전문가와 인권국제연대 전문가 발굴과 양성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와 결차에 관한 정보자료집증과 체계화, 국제연대센터의 설치, 인권협 해외 대표자, 대표단체의 설치등이 과제로 나서고 있다.

안재구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 행사 안내 ◆

□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일시 : 10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참여단체 : 전노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등

□ 판결의 그늘, 오픈판심판한다(살인혐의 덮어 썼던 김기웅 순경 사건)

·일시 : 10월 27일 오후 5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일시 :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국가, 자본가, 브로커등에 3중착취 당해

‘현대판 노예 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보고 대회 및 토론회가 27일 종로성당에서 노동운동가, 종교인, 시민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전노대등 11개단체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인사말에서 김영대 전노대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는 국경을 뛰어넘어 계급적 연대를 해왔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국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세계 어느 곳이든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

김재오씨는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외국인 취업연수생은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 노동자이다. 이들은 국가, 자본가, 중간 부로커로부터 삼중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한 윤우현씨도 “나찌의 대학살, 관동대지진이나 정용, 정신대 등 일제의 만행은 바로 외국인의 차별에서 비롯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결국 역사적 범죄를 놓는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자고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온 스중간브로커 회사인 동양인력개발을 고발하고, 스노동부, 법무부등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하며, 스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캠페인 사업등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살인혐의 김기웅순경 사건, 오픈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직변호사, 한인섭교수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형사고법판사, 억울한 재판을 당한 경험을 가진 시민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김기웅씨를 무죄석방케 한 진범 서진현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들이 모여 평가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형사소송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수사과정, 재판과정의 불공정성과 억울함 등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있다. 재판을 진행중인 김상덕씨는 모든 재산을 다날렸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검사에게 해당된 사건이 너무 많다. 사법계가 너무도 보수적이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교수는 “열린 법정은 보다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인권옹호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충평을 대신했다.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취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91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최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금의 구조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 면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의 구조에서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취업연수생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93년 11월 26일 정부선하 법무부, 노동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4개 부처는 94년 5월 말까지 '해외취업연수생' 2만명을 10개국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4년 말까지 1만명의 취업연수생을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올해만해도 총 3만명의 외국인 취업연수생이 새로 입국하게 된다.

취업연수생은 1년동안 기술연수 목으로 왔지만 이들에게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없다.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취업연수생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취업연수생의 수입경로

취업연수생은 우선 자국에서 한국으로 가기위해 자국 인력회사를 찾는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이들 인력회사는 자국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한국의 인력회사와 연결되어 있다. 취업연수생은 한국으로 올 때 인력회사에게 상당한 수수료(1800불)를 낸다. 한편, 국내 인력회사는 국내기업에게 노동자를 알선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감시하는 역할도 대행한다. 인력회사는 공장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아 80%는 본국으로 송금하고 20%는 출국 때 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관리한다. 현재

한국에는 23개 인력회사(브로커)가 있고 이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하로 편제되어 있다.

연수생 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8월말까지 입국한 2만명의 수입댓가로 5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인력회사들은 보증금으로 거두어들인 돈 1백여억원을 예치하여 이자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정한 취업연수생의 노동조건은 "월급여 210~260불, 일 8시간(주44시간)노동에 숙식제공, 산재시 상해보험 적용, 취업전 교육을 실시, 연수기간은 1년이며 1년까지 재연장" 등의 조건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지광고를 통해서 월급여 450~500불, 기술습득 가능, 숙식제공, 일 8시간(주 44시간)노동, 생필품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알고 왔으나 한국 도착후 물거품같은 꿈에서 깨어난다. 실제 이들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받는 댓가란 월급 210불, 일 8~12시간 노동에 월급은 210불에 불과하다. 물론 생필품은 제공받지 못하고 회사밖 외출도 금지당한다. 또한 임금은 매월 인력회사가

공장으로부터 직접 받아 80%는 본국으로 송금, 20%는 출국때까지 보증금으로 보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 받으며, 매 월급 11불씩을 인력관리비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조건에서 기술교육은 없고 단지 한국말로 작업지침에 관한 설명을 들을 뿐이다.

-감시 감금노동

인력회사는 연수생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떼어간 돈으로 무선안테나가 달린 차량과 무전기를 구입하여 취업연수생을 밤낮없이 감시한다. 공장안에서도 연수생들이 나오지못하도록 가능한 대문쪽으로는 못오게 한다. 고국에 편지를 쓰면 이것은 회사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전화 또한 쓸 수 없다. 여권은 공항에서부터 압수당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수생이 이탈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94.10.10).

이상은 정부가 취업연수생 제도에 적극적 관심을 얼마나 쏟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

윤우현(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취업연수생제 폐지

현재 법상 외국인 취업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말이 기술을 배우려 온 연수생일뿐 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하는 일은 국내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취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무권리자이다. 또한 그들은 기업주와 중간인력회사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하다. 임금도 법적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용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감금, 감시 노동상태도 근로 감독할 수 없다. 외국인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 등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인력수입은 노동자 자격을 주는 노동법에 두루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아래놓여 있는 편법적 무자격 노동자를 양성하는 노동력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서 아주노동자로 개념 확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한 자는 국경을 넘어왔다고 해도 노동자임은 분명하다. 이들은 이주라는 형식으로 자본을 따라 이동한다. 이들에게는 노동권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에 따른 주거권, 결혼권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11호 조약에서 이주 노동자의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97, 66, 143호 조약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그 가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 노동조합의 역할,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의 문을 개방하여 노조규약내 이들을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수생이 이탈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94.10.10).

이상은 정부가 취업연수생 제도에 적극적 관심을 얼마나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접촉의 자유에 대한 권리자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렸던 제46차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범한 고문의 개념을 인정하는 본 협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마찰, 국제적인 의무조항의 이행에 따른 부담 등으로 정부 각 부처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올해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약가입 따른 국내법 제정비 필요

고문방지협약 가입 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게 되며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면 정식으로 이 조약의 효력을 발생된다.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조약 발효 1년 안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4년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명분만을 노린 협약가입 이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인의 청원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해 국가의 어떠한 개인도 청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인권전문가들은 핵심을 편재 가입하여 국제적인 명분만을 얻으려는 기만술책이라는 비난이 높다. 인권단체들도 정부의 이러한 가입동의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광범하게 논의하고 하고 있다(유보하기로 한 조항은 2면).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등 핵심조항 유보

정부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편집자 주) 가입 동의안에 핵심 조항에 대한 유보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이 28일 확인되었다.

중요한 개인청원권 유보

정부는 이 동의안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인권보장 의지를 보이고, 인권존중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고양하며,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면서도 "고문을 받지 않고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협약을 위한 기초는 75년 12월 9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으로 마련되어 9년간의 국가간의 협의 끝에 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 협약의 약속에 따라 20개국이 가입한 지난 87년 6월 26일 정식 발효되었다(94년 6월 1일 현재 82개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함세웅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강기훈 공대위)의 함세웅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또 함 신부는 세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전민련 업무일지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유서와 동일'하다고 감장해 놓고도 나중에 그 부분을 추궁당하자 여려사람이 썼음을 알고 감정했다고 증언한 점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강기훈 공대위는 이번 고발이 강기훈씨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재심요건이 까다로운 사법절차에서 우선 강기훈씨 유조의 중대한 증거가 허위였음을 밝히는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28일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공직사회, 민간기업체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승중에 있습니다.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다. 김형영씨는 지난 91년 서강대학교 육상에서 분신자 살한 김기설씨의 유서필적과 강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을 함으로써 재판부가 강씨의 유서대필사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성안된 내부비지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분적으로는 비리의 사슬에서 벗어나 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시 ‘지원여부 검토’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 해' 기준입장 재확인

외무부는 24일 정신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있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대협에 회신해왔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지난 5일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해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건은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군대위안부 피해자간의 중재부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일본의 민간위로금 지급안 반대 및 진상규명을 제촉구하는 정대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가도록 요구했다고 밝히며, "정부차원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린바 있다"

는

기준의 입장은 재확인했다. 외무부는 또한 65년 체결된 한·일간 제협정시책임자처벌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안에서 요약)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인권하루소식

94년 11월

(제276호 - 제297호)